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책 임 운 영 기 관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개 황

II.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일반회계	7
가. 세 입	7
나. 세 출	11
(1) 총 괄	11
(2) 이 용	15
(3) 전 용	16
(4) 이 월	17
(5) 불 용	18
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경찰병원)	19
가. 세 입	19
나. 세 출	20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
4. 재무결산	22
가. 재정상태 분석	22
나. 재정운영 분석	24
다. 순자산변동 분석	25

Ⅲ. 검토의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경찰병원]

1.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	26
가. 개 요	26
나. 경찰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 및 병상가동률 제고 등을 통한 진료 수입확대 필요	27

【일반회계 세출결산】

[경무인사기획관실]

1. 경무인사지원(7131-313)	33
가. 개 요	33
나. 청년인턴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5
2. 퇴직경찰관 취업지원(7135-312)	39
가. 개 요	39
나. 퇴직경찰관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 취업지원 컨설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40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45
가. 개 요	45
나.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46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 기동력 강화(4231-311)	52
가. 개 요	52
나. 예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 필요	54

2. 장비관리유지(4231-314) 59

가. 개 요 59

나. 장비구매 관련 조달과정 투명성과 명확성 제고 필요 60

다. 경찰청 안전제압 장비 도입 관련 전주기 관리 철저 및 검증체계 강화 66

3.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4431-613) 72

가. 개 요 72

나. 연구기관 단계 최종 집행 저조 문제 73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76

가. 개 요 76

나. 기동순찰대 신설관련 면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 비효율 개선 필요 78

2. 범죄예방 및 치안상황관리(1431-311) 80

가. 개 요 80

나. 지역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대응 관련 전산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필요 82

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의 실효성 점검 필요 85

라. 치안센터 상주근무자 확대 등 활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92

[생활안전교통국]

1. 사회적약자보호활동(1132-311) 95

가. 개 요 95

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인력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96

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03

(1) SPO 인력 부족 및 지역별 편차 문제 107

(2) 학교폭력 증가 및 저연령화 추세에 따른 예방효과의 실효성 제고 108

(3) 업무 범위 정립 및 전문성 강화 110

2.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112
가. 개 요	112
(1)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결산	112
나.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 면허 적성검사 수입 과소 추계	115
다. 운전면허시험장 시험용차량 구매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18

[경비국]

1. 기동대 운영 및 관리(2131-314)	122
가. 개 요	122
나.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 부지점유 권원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 공사와 지속 협의 필요	124

[수사국]

1.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2)	131
가. 개 요	131
나.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수사인력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133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정원 확보 및 보이스피싱 관련 부처·기관 과의 소통·협력 강화 필요	140

[수사인권담당관실]

1.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1231-317)	145
가. 개 요	145
나.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실시율 저조	146

[중앙경찰학교]

1. 신임순경교육(4133-311)	153
가. 개 요	153

나. 예산비목 구분없이 일반용역비로 처리하는 집행방식 부적정	154
다. 중앙경찰학교 유류비 과소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세목변경 지양 필요	158

[경찰대학]

1. 경찰대학운영(4131-311)	161
가. 개 요	161
나. 경정교육과정 이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163
다. 경찰대학 연례적 건설비 과다 이월	16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1. 경찰병원 인건비(4302-111)	171
가. 개 요	171
나. 인건비 예산 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172

I. 개 황

□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 회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경찰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개의 프로그램, 33개의 단위사업, 15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집행되었음.

<2024년도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도>

프로 그램 (12 개)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 (1100)	범죄수사 활동 (1200)	교통안전· 소통확보 (1300)	치안상황 대응강화 (1400)	사회질서 유지 (2100)	공공안전 위험예방 및 대응강화 (2200)	국가안보 확보 (3100)	전문경찰 양성 (4100)	치안인프라 구축 (4200)	과학치안 활성화 (4400)	경찰행정 지원 (7100)	회계간 거 래 (전출금) (8000)
단 위 사 업 (33 개)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 강화	교통사고 예방	치안상황 관리	경비경찰 역량강화	공공안전 정보활동	외사경찰 활동	경찰대학 운영	경찰장비 현대화	정책연구 개발 (R&D)	본부 인건비	회계간 전출금 (손익)
	사회적 약자보호	수사업무 정보화 (정보화)	교통행정 전산화 (정보화)				국제교류 협력활동	경찰인재 개발	헬기운용 및 현대화		소속기관 인건비	회계간 전출금 (자본)
							대테러위기 상황관리	신임순경 교육	경찰유무선 망개선		본부 기본경비	
								수사경찰 전문교육	경찰정보화 기반고도화 (정보화)		소속기관 기본경비	
								우수인재 확보 및 능력개발			치안행정 업무지원	
											행정효율 성증진및 미래치안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과 인권경찰 정립	
											대국민치안 정책제공	
											경찰복지 증진	

□ 먼저,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 총 2조 8,832억 4,9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2조 7,990억 1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842억 4,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경찰청 회계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1,370,726	-	1,370,726	2,883,249	1,550,839	4,722	1,550,839
일 반 회 계	1,279,380	-	1,279,380	2,799,001	1,466,614	4,722	1,327,66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91,346	-	91,346	84,248	84,225	-	23

※ 자료: 경찰청

□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액은 1조 3,707억 2,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3.1%, 징수결정액 대비 53.8%에 해당하는 1조 5,508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조 5,508억 3,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예산액대비 수납률(C/A)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률(C/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1,370,726	2,883,249	1,550,839	113.1	53.8	4,722	1,327,688
일반회계	1,279,380	2,799,001	1,466,614	114.6	52.4	4,722	1,327,665
책임운영기관특별 회계(경찰병원)	91,346	84,248	84,225	92.2	100.0	-	23

※ 자료: 경찰청

□ 2024년도에는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전년대비 7.9%포인트 감소함.

<연도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2019년도~2024년도)>

(단위: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100.1	103.2	116.2	127.3	121.0	113.1
일반회계	99.8	102.3	115.6	128.1	122.4	114.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103.8	112.6	122.5	118.0	102.4	92.2

※ 자료: 경찰청

<연도별 미수납액 누적현황(2019년도~2024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987,111	1,007,033	1,050,399	1,161,566	1,276,051	1,327,688
일반회계	987,089	1,007,010	1,050,376	1,161,537	1,276,026	1,327,66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22	22	23	28	25	23

※ 자료: 경찰청

- 다음으로,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결산(예산현액)은 13조 712억 9,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3%에 해당하는 12조 9,777억 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862억 3,200만원임.
- 2024년도 경찰청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13조 455억 9,9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56억 9,700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3조 712억 9,600만원이 되었음.
-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가 12조 8,943억 6,100백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784억 8,4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억 6,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경찰청 회계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기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이 용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계	13,045,599	25,697	-	±15,201	±14,080	13,071,296	12,977,705	7,358	86,232
일 반 회 계	12,949,393	25,662	-	±14,870	±14,080	12,975,055	12,894,361	7,358	73,33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91,346	35	-	±331	-	91,381	78,484	-	12,89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860	-	-	-	-	4,860	4,860	-	-

※ 자료: 경찰청

□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 98.9%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99.3%임.

<연도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2019년도~2024년도)>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97.3	98.6	97.3	98.1	98.9	99.3
일반회계	97.3	98.6	97.3	98.1	98.9	99.4
특별회계	92.0	98.0	95.9	94.9	97.2	86.6

※ 자료: 경찰청

□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5,800만원은 계약체결 지연, 원자재 수급 부족으로 인한 제작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전년 256억 9,700만원 대비 71.4% 감소하였음.

<연도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2019년도 ~2024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9,043	31,291	16,429	17,958	25,697	7,358
일반회계	9,043	31,113	16,389	17,922	25,662	7,358
특별회계	-	178	41	36	35	-

※ 자료: 경찰청

□ 2024년도 불용액은 전국 관서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것이며,
전년 1,095억 6,200만원 대비 21.3% 감소한 862억 3,200만원임.

<연도별 불용액 현황(2019년도~2024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88,965	133,581	309,791	220,157	109,562	86,232
일반회계	282,530	132,030	306,254	215,754	107,289	73,336
특별회계	6,435	1,550	3,537	4,403	2,272	12,896

※ 자료: 경찰청

Ⅱ.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1,279,380	2,799,001	1,466,614	114.6	52.4	4,722	1,327,665

※ 자료 : 경찰청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2,793억 8,000만원으로, 2조 7,990억 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액 대비 114.6%, 징수결정액 대비 52.4%에 해당하는 1조 4,666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조 3,276억 6,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279,380	1,279,380	2,799,001	1,466,614	4,722	1,327,665
재산수입	3,237	3,237	4,129	3,221	-	908
경상이전수입	1,266,839	1,266,839	2,784,429	1,453,025	4,722	1,326,68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713	4,713	6,076	6,008	-	68
관유물매각대	4,591	4,591	4,367	4,360	-	7

※ 자료 : 경찰청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2018년부터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체납과태료 징수를 제고 노력으로 과태료 수납액이 증가하여 114.6%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2019년도~2024년도)>

(단위: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	99.8	102.3	115.6	128.1	122.4	114.6

※ 자료: 경찰청

□ 세입과목별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벌금 및 과태료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초과 수납하였으나, 재산수입 및 관유물매각대의 수납액은 미달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납액	세입예산액 과의 차이	내 역
합 계	1,279,380	1,466,614	187,234	
재산수입	3,237	3,221	△16	관유물(토지, 건물) 대여료
경상이전수입	1,266,839	1,453,025	186,186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713	6,008	1,295	기타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4,591	4,360	△231	기계기구 등 고정자산 매각대

※ 자료: 경찰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1,279,380	1,466,614	1,327,665	187,234	
재산수입	3,237	3,221	908	△16	
토지대여료	1,314	1,012	409	△302	· 토지임대료 수입 감소
건물대여료	1,502	1,653	492	151	· 건물임대료 수입 증가
기타관유물대여료	1	1	-	-	· 기타관유물 대여 수입 증가
기타재산수입	420	555	7	135	· 이자수입 증가
경상이전수입	1,266,839	1,453,025	1,326,682	186,186	
벌금및과료	84,079	80,534	2	△3,545	· 통고처분 감소
과태료	1,134,090	1,318,886	1,083,736	184,796	· 과태료처분 증가
징계부가금	46	197	1,025	151	· 징계부가금 수입 증가
변상금	74	201	5,735	127	· 체납변상금 징수 증가
위약금	1,036	418	-	△618	· 위약금 감소
가산금	36,110	36,309	233,765	199	· 가산금 수입 증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1,404	16,480	2,418	5,076	· 과오지급 반환금 등 증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713	6,008	68	1,295	
면허료 및 수수료	581	458	-	△123	· 시험응시료 수입 감소
수업료	491	520	13	29	· 수업료 수입 증가
기타잡수입	3,641	5,030	57	1,389	· 잡수익 증가
관유물매각대	4,591	4,360	7	△231	
기계기구매각대	3,788	1,891	7	△1,897	· 기계기구 매각 감소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21	441	-	20	· 기자재 등 매각 감소
토지매각대	382	2,028	-	1,646	·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 증가

※ 자료: 경찰청

- 재산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99.5%에 해당하는 32억 2,1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토지대여료 등 감소에 따른 것임.
- 경상이전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14.7%에 해당하는 1조 4,530억 2,500만원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대수 증가 및 공익신고 활성화로 과태료 수납액 증가에 따른 것임.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27.5%에 해당하는 60억 8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잡수익이 세입예산액 보다 13억 8,900만원 증가되는 등에 따른 것임.
- 관유물매각대에서는 세입예산액의 95.0%에 해당하는 43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는바, 기계기구매각대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조 9,493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56억 6,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2조 9,750억 5,5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12조 8,943억 6,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733억 3,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구분	세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증 감	이 증 감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2,949,393	25,662	-	±14,870	±14,080	12,975,055	12,894,361	7,358	73,336
범죄예방 및 사회적약자보호		17,506	0	-	±0	0	17,506	16,850	0	656
범죄수사활동		401,095	186	-	±518	-796	400,485	392,643	595	7,247
교통안전소통확보		313,486	325	-	±2	-1,400	312,411	305,919	531	5,961
치안상황대응강화		47,441	2,044	-	±0	0	49,485	47,684	524	1,277
사회질서유지		140,034	1,159	-	±2,171	13,284	154,477	153,165	0	1,313
공공안전위험예방 및 대응강화		34,621	0	-	±0	0	34,621	33,300	0	1,321
국가안보확보		47,712	146	-	±0	796	48,654	47,285	212	1,156
전문경찰양성		68,630	2,657	-	±698	0	71,287	68,488	2,091	707
치안인프라구축		494,099	17,984	-	±365	-2,000	510,083	483,632	2,153	24,299
과학치안활성화		56,691	0	-	±0	0	56,691	56,691	0	0
경찰행정지원		11,278,481	1,161	-	±11,116	-9,884	11,269,758	11,239,107	1,251	29,400
회계간거래		49,597	0	-	±0	0	49,597	49,597	0	0

※ 자료: 경찰청

- 이월액은 140억 8,000만원으로 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전용액은 148억 7,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액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5,800만원은 경찰대학 훈련센터 총사업비 증액 협의 지연 13억 8,400만원, 피복 원자재 수급 차질 13억 7,000만원, 사격 훈련 시스템 도입 해외부품 수급지연 5억 2,400만원 등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 733억 3,600만원은 정·현원차이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75억 7,8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57억 5,800만원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4.9%, 6,080억 4,900만원이 증가한 12조 8,943억 6,100만원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19년도~'24년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지출액	10,673,003	11,176,395	11,639,009	11,997,861	12,286,312	12,894,361
증감액	440,199	503,392	462,613	358,852	288,451	608,049
증감률	4.3	4.7	4.1	3.1	2.4	4.9

※ 자료: 경찰청

□ 세출예산 비목별로는 인건비가 인력증원 및 보수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 전출금 등은 경찰병원 전출금 증액으로 전년대비 65.1% 증가함.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
2024년도	12,894,361	10,106,826	1,942,717	314,304	480,917	49,597
2023년도	12,286,312	9,686,591	1,853,288	290,397	426,000	30,035
증감액	608,049	420,235	89,429	23,907	54,917	19,562
증감률	4.9	4.3	4.8	8.2	12.9	65.1

※ 자료 : 경찰청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4,026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4,800만원 (1.6%)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9조 9,61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96억 5,700만원(4.3%) 증가하였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증 감	
				%
합 계	12,286,312	12,894,361	608,049	4.9
인 건 비	9,551,690	9,961,347	409,657	4.3
기 본 경 비	396,490	402,638	6,148	1.6
사 업 비	2,338,132	2,530,376	192,244	8.2

※ 자료: 경찰청

(2) 이 용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액은 140억 8,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용	7,435	14,080	6,645	89.4

※ 자료: 경찰청

□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배상금 및 국제부담금 충당을 위한 것이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14,080	
배상금	13,284	• 배상금 지급
국제부담금	796	• 국제부담금 충당

※ 자료: 경찰청

(3) 전 용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148억 7,000만원으로 2023년도 245억 2,200만원 대비 96억 5,2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전 용	24,522	14,870	△9,652	△39.4

※ 자료: 경찰청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부족액 99억원, 각종 배상금 부족액 21억원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14,870	
공공요금및제세	9,853	• 공공요금 부족
배상금	2,036	• 배상금 지급
연구비	960	• 각종 연구비 부족
업무추진비	710	• 경찰서장 업무추진비 부족분 총당
임차료	407	• 경호 버스 임차료 총당
기타	904	• 고용부담금, 교육기관 운영비 등 총당

※ 자료: 경찰청

(4) 이 월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73억 5,800만원으로, 2023년도 256억 6,200만원 대비 183억 4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월	25,662	7,358	△18,304	△71.3

※ 자료: 경찰청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경찰대학 훈련센터 총사업비 증액 협의 13억 8,400만원, 경찰관 피복 원자재 수급 차질 13억 7,000만원,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해외부품 수급 지연 5억 2,400만원 등이 이월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7,358	
물건비	3,236.5	· 제품 개발 지연 및 생산 지연 등
건설비, 유형자산 등	4,121.6	· 제품 개발 지연 및 생산 지연 등

※ 자료: 경찰청

(5) 불 용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733억 3,600만원으로, 2023년도 1,072억 8,900만원 대비 339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불 용	107,289	73,336	△33,953	△3.2

※ 자료: 경찰청

-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휴직 등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75억 7,8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557억 5,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73,336	
인건비	17,578	· 결원(휴직 등 정·현원 차이)로 인한 불용액
물건비	47,564	· 집행잔액
이전지출	2,524	· 집행잔액
자산취득 및 운용	5,670	· 집행잔액

※ 자료: 경찰청

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경찰병원)

□ 경찰병원은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¹⁾으로 지정되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특별회계는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운용되고 있음.

가. 세 입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손 익 계 정	86,990	79,736	79,713	-	23
영업수입	31,700	24,188	24,169	-	2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6,460	6,230	6,226	-	3
전년도세계잉여금	3,184	3,672	3,672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5,646	45,646	45,646	-	-
자 본 계 정	4,356	4,512	4,512	-	-
전년도세계잉여금	403	559	559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53	3,953	3,953	-	-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869억 9,900만원으로, 797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7억 1,300만원을 수납하고, 자본계정의 세입예산액은 43억 5,600만원으로, 45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전액 수납하였음.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나. 세 출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전 용	이 용 이 체				
손 익 계 정	86,990	35	-	±311		87,025	74,858	-	12,166
인 건 비	50,141	-	-	-311		49,830	40,884	-	8,946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901	-	-	+93	-	2,994	2,915	-	79
진료업무지원	24,707	35	-	+157	-	24,899	22,121		2,778
장례식장운영	3,943	-	-	+61	-	4,004	3,641	-	363
공무원연금부담금	5,296	-	-	-		5,296	5,296	-	-
감가상각비	1	-	-	-	-	1	1	-	-
당기순이익	1	-	-	-	-	1	1	-	-
자 본 계 정	4,356	-	-	-	-	4,356	3,626	-	730
기본경비	183	-	-	-	-	183	182	-	1
자산취득	4,173	-	-	-	-	4,173	3,444	-	729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세출예산액은 869억 9,0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3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70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48억 5,800만원이며, 121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자본계정의 세출예산(현)액은 43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 2,600만원이며, 7억 3,000만원은 불용하였음.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라 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²⁾.

□ 경찰청은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제주자치경찰인력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이체				
계	4,860	-	-	-	4,860	4,860	-	-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제주계정	4,860	-	-	-	4,860	4,860	-	-

※ 자료: 경찰청

□ 2024년도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48억 6,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4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자산	17,813,160	18,086,074	272,914	1.5
. 유동자산	1,308,108	1,369,690	61,582	4.7
. 일반유형자산	16,367,822	16,585,157	217,335	1.3
. 무형자산	98,980	92,656	△6,324	△6.4
. 기타비유동자산	38,250	38,570	320	0.8%
II. 부채	395,123	402,014	6,891	1.7
. 유동부채	49,693	55,366	5,673	11.4
. 장기차입부채	62,556	71,535	8,979	14.4
. 장기충당부채	104,738	105,720	982	0.9
. 기타비유동부채	178,136	169,393	△8,743	△4.9
III. 순자산	17,418,038	17,684,060	266,022	1.5
.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	-
. 적립금및잉여금	3,627,942	3,933,000	305,058	8.4
. 순자산조정	6,891,446	6,852,410	△39,036	△0.6

※ 자료: 경찰청

□ 2024년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총액은 18조 860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9억 1,400만원(1.5%) 증가하였는데, 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이 2,173억 3,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부채 총액은 4,020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 9,100만원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규 금융리스부채 등으로 인한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가 각각 56억 73백만원, 89억 7,900만원 증가한 반면, 어린이집 관련 BTL미지급금 상환으로 인한 기타비 유동부채 87억 4,3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7조 6,84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0억 2,200만원(1.5%) 증가하였음.

나. 재정운영 분석

<2024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A)	2024년도 (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479,560	1,575,482	95,922	6.5
가. 프로그램총원가	1,515,392	1,605,787	90,395	6.0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5,832	30,305	△5,527	△15.4
II. 관리운영비	12,401,048	12,936,306	535,258	4.3
III. 비배분비용	939	16,361	15,422	1,642.4
IV. 비배분수익	55,165	50,314	△4,851	△8.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3,826,382	14,477,836	651,454	4.7
VI. 비교환수익 등	233	194	△39	△16.7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3,826,148	14,477,642	651,494	4.7

※ 자료: 경찰청

-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제외한 금액인바, 2024년도 재정운영결과는 14조 4,77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인 6,514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가 5,352억 5,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 2024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1조 5,754억 8,200만원이었음.
-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14조 4,77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인 6,51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순자산변동 분석

<2024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17,073,386	17,418,038	344,652	2.0
II. 재정운영결과	13,826,148	14,477,642	651,494	4.7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4,166,667	14,782,699	616,032	4.3
IV. 조정항목	4,133	△39,036	△43,169	△1,044.5
V. 기말순자산 (I-II+III+IV)	17,418,038	17,684,060	266,022	1.5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17조 6,840억 6,000만원으로 2023년말 대비 1.5%인 2,660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4조 4,776억 4,2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4조 7,826억 9,900만원, 조정항목은 △390억 3,6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Ⅲ. 검토의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1.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

- 경찰병원은 2024년 병상가동률이 25.5% 수준이고, 2024년 입원환자수는 19,592명으로 2016년 76,615명의 25%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결산상 수입이 수입계획 대비 76.2%에 그쳤는 바,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병상가동률을 제고하는 등 진료수입을 높일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은 경찰병원의 입원·외래환자에 대한 진료수입 및 제증명료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 항목으로 2024년도에는 317억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음. 그 중 징수결정액은 241억 8,800만원이고, 수납액은 241억 6,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76.2%임.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31,700	31,700	-	31,700	24,188	24,169	20	-	32,207

※ 자료: 경찰청

나. 경찰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 및 병상가동률 제고 등을 통한 진료 수입확대 필요

- 경찰병원의 2024회계연도 수입 예산은 317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기간의 평균 결산액 298억 5,000만 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가 인상률인 6.2%³⁾를 반영한 것임.
- 경찰병원의 2024회계연도 수입 예산 중 241억 8,000만 원에 대해 징수가 결정되었는데, 이는 예산 현액 317억 원의 76.3% 수준임.
- 경찰병원은 2024년 수입 결손의 주요 원인을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및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중인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보고 있음.
- 경찰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2012년 12월~2022년 5월) 과정에서 진료환자수가 감소한 뒤, 2023년에는 32만 8천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대비 82.2% 수준까지 회복하여 2026년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환자수의 회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파업으로 전공의 부재에 따른 진료공백이 발생하여 2019년대비 69.4%까지 환자 수 감소로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의 부진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3)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4개년 수가 인상률 6.2% = 2021년 수가 인상률 1.6% + 2022년 수가 인상률 1.4% + 2023년 수가 인상률 1.6% + 2024년 수가 인상률 1.6%)

- 그러나, 입원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시점인 2016년부터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2024년 입원환자수는 19,529명으로 2016년 입원환자수 76,615명 대비 57,086명(75%)이 감소했으며, 2024년 병상가동률은 25.5%로 2015년 병상가동률 63%보다 37.5%p감소 함. 환자 유형별로는 의무경찰과 일반환자의 감소폭이 큼.

<2016년~2024년 경찰병원 입원환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입원 합계	경찰	의무경찰	퇴직경찰	소방	퇴직소방	일반환자
2016년	76,615	7,314	29,112	5,055	240	110	34,784
2017년	70,361	7,825	24,514	5,404	241	31	32,346
2018년	63,788	7,465	17,374	7,465	402	49	33,139
2019년	65,503	7,594	13,031	5,589	271	73	38,945
2020년	55,703	4,041	13,798	4,531	253	112	32,968
2021년	31,018	2,201	1,752	1,896	291	34	24,844
2022년	30,957	3,877	2,141	3,246	427	38	21,228
2023년	32,197	4,888	249	5,469	324	66	21,201
2024년	19,529	3,577	-	3,356	228	30	12,338

※ 자료: 경찰병원

<경찰병원 병상가동률(2015년 ~ 2024년)>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병상가동률	63.0%	59.8%	58.2%	53.0%	57.7%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병상가동률	52.7%	61.8%	50.5%	43.9%	25.5%

※ 자료: 경찰병원

- 외래환자는 2016년 33만명인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지만 2024년 26만명으로 2016년 대비 7만명(22%)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환자 구성으로 보면 의무경찰과 일반 환자의 감소폭이 큼.

<2016년 ~ 2024년 경찰병원 외래환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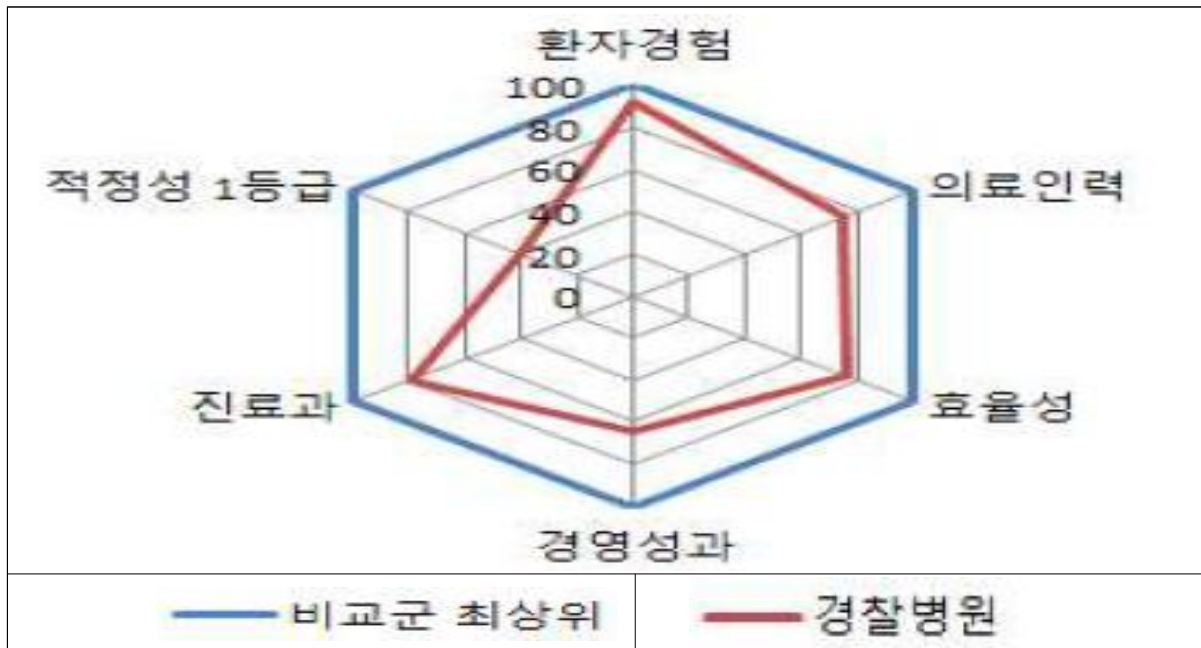
연도	외래 합계	경찰	의무경찰	퇴직경찰	소방	퇴직소방	일반환자
2016년	330,679	93,879	33,509	62,625	9,999	1,554	129,113
2017년	323,145	93,859	26,901	66,483	9,348	1,874	124,680
2018년	312,997	96,781	25,959	73,143	9,016	2,489	105,609
2019년	333,476	106,034	16,998	77,833	8,748	3,332	120,531
2020년	295,046	94,040	12,110	71,564	7,495	3,164	106,673
2021년	280,808	87,859	7,689	71,251	7,789	3,307	102,913
2022년	280,703	96,964	3,571	77,494	8,479	3,986	90,209
2023년	295,963	106,831	388	82,766	9,560	4,885	91,533
2024년	257,520	89,901	8	75,934	8,146	4,625	78,906

※ 자료: 경찰병원

- 입원환자수 및 병상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병원의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는 진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동 사업계획에서는 비교군 최상위와 적정성 평가 1등급 항목을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위해 의사 및 간호사의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충원활동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비교군 최상위 대비 경찰병원 역량평가>

구 분	환자경험 (심평원 병원평가)	의료인력 확보율 (100병상당 전문의 수)	효율성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	경영성과 (전문의 1인당 진료 수입)	진료역량 (진료과수)	진료역량 (* 적정성 평가 1등급 항목수)
비교군 최상위	91.24 (전체평균 81.30)	24.58명 (종합병원 평균 15명)	1,549명 ※조정 184,369명	8억 7,000만원	30개	22개 항목
경찰병원	85.16	18.47명 ※379병상, 70명	1,740명 ※조정 121,85명	4억 3,800만원	23개	7개 항목



※ 자료: 경찰병원, 2024년 경찰병원 사업계획

□ 경찰병원은 의료질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정진료관리실(2017년)과 류마티스내과(2015년)를 신설했고, 근골격센터(2015년)·뇌신경센터(2019년)를 설립·운영하며, 통합진료센터(2019년)를 설치함. 그리고 병상가동률 및 외래진료 환자 수 증가를 위해 전문의 성과·보수 연계, 불면 등 특수 직업군 특화 의료서비스, 간호간병 통합병상 신설·확대, AI판독 및 로봇 도입, 경찰 교육기관 순회진료, 외래 진료시간 및 초진 관리 등을 실시함.

○ 이 중 전문의의 성과와 보수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는 연봉 자율책정 특례제도임. 경찰병원 소속 의사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급별 연봉 상한을 적용 받음. 2024년 1월에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

제2항4)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6호, 2024. 1. 19.) 제4장 [별표 3]5)에 따라 경찰병원에서 의사 등 면허 소지자가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위(일반임기제 5호 이상 등)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연봉한계액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 연봉 자율채정 특례제도를 2024년 9월부터 실시함. 동 제도를 통해 경찰병원은 진료·수술 등의 실적을 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경찰병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의무직 중 58%가 연봉 자율채정 특례제도의 대상으로 전환하였음. 동 제도가 당초 기대한 것과 같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고, 의료인력들이 경찰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성실히 수행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에 따라 연봉 자율채정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연봉채정의 특례)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5) [별표 3]

【임기제 공무원 연봉 자율채정 특례 적용대상 직위·분야】

(영 제37조의2제2항, 영 제67조제2항)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다음의 기관에서 의료업무 또는 역학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위

(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5호 이상, 전문임기제 나급 이상)

1) 의료시설

-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방부(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경찰청(경찰병원), 질병관리청(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 경찰병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공공 의료기관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뛰어난 진료역량을 보유한 의료기관들과의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경찰병원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⁶⁾할 때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인력 채용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병상가동률을 제고하여 경찰병원의 운영실적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병원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경찰병원 홈페이지의 병원 소개항목에서는 “경찰병원은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경무인사기획관실】

1. 경무 인사 지원(7131-313)

- 청년인턴 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채용 중심으로 채용환경이 변화하면서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가 91점에 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청년인턴 중 21명은 취업준비, 자기개발 등의 이유로 중도 사직하여 인건비 등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청년의 취업 환경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무인사지원’ 사업은 경찰관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경찰관서 현업 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경찰관서 보안시스템을 개선하고 청사방호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인턴의 채용·관리사업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2024년 예산은 310억 25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6억 8,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7억 1,300만원이며, 집행액은 304억 5,700만원(집행률: 96.0%), 불용액은 12억 5,600만원(불용률: 4.0%)임.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무인사지원	31,025	31,025	688	-	-	31,713	30,457	-	1,256	33,070

※ 자료: 경찰청

나. 청년인턴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청년인턴 사업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근 수시·경력 채용의 확대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19세~34세)⁷⁾들에게 행정기관 직무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임.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로 청년인턴 인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2023년 200명, 2024년 300명의 청년인턴을 배정받았음.
- 경찰청은 2023년에는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의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예산 17억 8,0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을 마련했고, 이 중 1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도퇴사, 단기계약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 7,800만원이 발생함.
- 경찰청은 2023년 4월 7일부터 19일까지 200명의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한 뒤 140명을 채용함. 이 중 9명이 취업 준비, 자기 개발 등 개인 사정으로 사직함.

<2023년 청년인턴 채용 현황>

채용 공고 (4월) 인원	신청인원	합격인원	채용인원	사직인원
200명	339명	148명	140명	9명

※ 자료: 경찰청

- 2024년에는 경무인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채용·관리

7)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사업의 예산 39억 9,000만원 중 35억 1,3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7,500만원이 불용됨.

<2024년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 예산 집행 현황>

예 산	집 행
○ 합계: 39억 9,000만원 · 일용임금: 33억 3,800만원 · 일반수용비: 5,000만원 · 국내여비 2억 2,600만원 · 고용부담금 3억 7,600만원	○ 합계: 35억 1,300만원 · 일용임금: 30억 ,800만원 · 일반수용비: 5,000만원 · 국내여비 1억 4,100만원 · 고용부담금 3억 1,200만원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2024년에는 4월 1차 공고에서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으로 구분하여 300명을 공고했고, 이 중 266명을 채용했으며, 2차~4차 공고를 통해 34명을 채용함.⁸⁾
- 경찰청은 청년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음. 경찰청에 따르면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은 다수가 대학생이었음.
- 2024년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이후 사직한 인원은 21명이고,⁹⁾

8) 2024년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대학 등 기관별 청년인턴 채용 현황

경찰청 36명	서울특별시경찰청 6명, 소속 경찰서 28명
부산경찰청 5명, 소속 경찰서 11명	대구경찰청 2명, 소속 경찰서 6명
인천경찰청 5명, 소속 경찰서 12명	광주경찰청 5명, 소속 경찰서 10명
대전경찰청 3명, 소속 경찰서 5명	울산경찰청 4명, 소속 경찰서 6명
세종경찰청 4명, 소속 경찰서 8명	경기남부경찰청 2명, 소속 경찰서 26명
경기북부경찰청 1명, 소속 경찰서 19명	강원경찰청 3명, 소속 경찰서 6명
충북경찰청 2명, 소속 경찰서 8명	충남경찰청 6명, 소속 경찰서 3명
전북경찰청 5명, 소속 경찰서 13명	전남경찰청 5명, 소속 경찰서 1명
경북경찰청 2명, 소속 경찰서 5명	경남경찰청 3명, 소속 경찰서 6명
제주경찰청 8명, 소속 경찰서 7명	경찰대학 9명
경찰인재개발원 2명	경찰수사연수원 2명

9) 경찰청은 사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추가채용을 진행하지는 않음.

주요 사직이유는 취업준비, 자기개발 등 개인사정임.

<2024년 청년인턴 채용 현황>

구 분	채용 공고 인원	신청 인원	합격 인원	채용 인원	채용 후 사직인원
4월 1차 공고 4. 3.~4. 16.	300명	747명	277명	266명	21명
6월 2차 공고 6. 10.~6.20.	34명	65명	21명	21명	
7월 3차 공고 7. 18.~7.29.	13명	24명	9명	9명	
8월 4차 공고 8. 16.~8. 22	4명	63명	4명	4명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내실있는 청년인턴 사업의 운영을 위해 각 경찰청 및 경찰서에 필요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¹⁰⁾ 모집 공고의 대상 직무에는 민원 응대 업무 지원 뿐만 아니라 홍보 영상 편집, 사업 관련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청년인턴 신청자의 능력이 직무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채용함.
- 경찰청이 작성한 청년인턴 제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민원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이 뛰어나 교육영상 및 홍보 작성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91%로

10)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순 사무보조·잡무를 원칙적으로 지양

2023년도 만족도인 89.1%보다 상승했고, 추천의향도 92.7%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실습기간 6개월에 대해서는 다소 짧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은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사직한 21건이 있어서 인건비 불용이 발생함. 경찰청에 따르면, 청년인턴의 중도 사직의 사유는 취업준비 등 개인사정임. 청년인턴 사업은 어려운 고용 환경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능한 인건비를 모두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청년인턴 지원자가 많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청년인턴 지원자에게 예비 순번을 부여하고, 해당 지원자를 예비 순번에 따라 2차 공고까지 청년인턴이 채용되지 않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년인턴 정원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방안, ② 업무 기여도가 높고, 계약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보이는데, 청년인턴 제도를 통한 청년고용의 확대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실시할 필요가 있음.

2. 퇴직경찰관 취업지원(7135-312)

- 경찰청은 2024년 퇴직예정경찰관 교육 신청자 중 58%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계급정년제 운영으로 60세 전 퇴직자도 많은 경찰청은 퇴직경찰관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교육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향후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컨설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전직지원센터 외에도 기존 치안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사업은 퇴직 경찰관의 안정적인 사회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지원 및 퇴직경찰관에 대한 취업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23억 1,200만원이며, 이 중 99.0%인 2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7.2%)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2,312	2,312	-	+ -8	-	2,312	2,290	-	22	2,312

※ 자료: 경찰청

나. 퇴직경찰관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 취업지원 컨설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퇴직경찰관 취업지원의 내역사업은 경찰관 전직 지원 교육(예산 12억 6,600만원), 전직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예산 9억 300만원) 등으로 구성됨.

<퇴직경찰관 취업지원의 내역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예 산	집행액
○ 경찰관 전직지원 교육 실시	12억 6,600만원	12억 100만원
○ 경찰관 전직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9억 300만원	9억 5,300만원
○ 운영비 등	8,700만원	8,000만원
○ 경기남부 전직센터 이전비	5,600만원	5,600만원
합계	23억 1,200만원	22억 9,000만원

※ 자료: 경찰청

- 경찰관 전직 지원 교육은 제천 연수원에서 4박 5일(28시간) 동안 퇴직 설계 과정, 전직 심화 과정의 운영(예산 8억 1,000만원), 이직 관련 자격증 취득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직 역량 개발비(예산 4억원), 귀농·귀촌 관련 위탁교육(예산 5,500만원)으로 구성됨.

- 2024년 퇴직 설계 과정과 전직 심화 과정의 실적을 살펴보면, 퇴직 설계 과정은 퇴직이 5년 남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미래 설계 전략을 강의하는데, 2024년 신청자 2,069명 중 1,313명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었고, 전직 심화 과정은 퇴직이 1년 남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재취업·귀농귀촌·창업·자격증 등을 강의하는데, 2024년에는 신청자 986명 중 47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

<2021년~2024년 퇴직 설계 교육 및 전직 심화 교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퇴직예정 경찰관	교육 신청 인원			교육 실시 인원			예산	집행액
		합계	퇴직 설계	전직 심화	합계	퇴직 설계	전직 심화		
2021년 ¹¹⁾	3,059	1,890*	932	528	1,503*	765	361	537	502
2022년	3,543	2,292	1,574	718	1,527	1,139	388	539	520
2023년	3,525	2,401	1,664	737	1,695	1,306	389	810	779
2024년	4,327	3,055	2,069	986	1,787	1,313	474	810	768

※ 자료: 경찰청

- 2024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퇴직 설계 과정과 전직 심화 교육을 합하여 교육 인원 수는 2021년 1,503명에서 2024년 1,787명으로 284명(18.9%)이 증가했고, 교육신청 인원수는 2021년 1,890명에서 2024년 3,055명으로 1165명(61.6%)이 증가하여 교육 신청인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11) 2021년에는 전직지원교육의 비대면 진행으로 발생한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전문교육과정(컨설턴트 양성과정, 공인인증자격취득과정)을 실시했고, 2020년 전문교육과정 신청 인원은 430명, 실시인원은 377명임.

- 경찰청은 퇴직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전직교육용역비 예산은 8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교육기관에서는 1인당 교육비가 약 37만원 수준이 필요하므로 교육인원이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해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 경찰청은 계급 정년제를 운영하여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찰관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경찰관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퇴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직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은 전국 6개의 전직지원센터에서 퇴직을 1년 앞두고 있는 경찰관 및 퇴직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전문상담인력 25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 1인에 대해 10시간 이상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전직지원센터의 상담전문인력 현황>

구 분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계
PM(총괄)	1	-	-	-	-	-	1
상담인원	6	5	4	3	3	3	24
총 계	7	5	4	3	3	3	25

※ 자료: 경찰청

- 2024년 1,860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고, 컨설팅을 받은 사람 중 1,435명이 보안직 등의 업무로 취업함. 컨설팅을 받은 사람 중 77.2%가 취업을 했는데, 이는 컨설팅을 신청한 사람이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보임.

<2021년~2024년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컨설팅 실시 인원	퇴직 예정자 (퇴직 1년 전)	퇴직자	예산	집행액	취업 현황
2021년	1,742	573	1,169	903	958	1,253명 취업 - 보안직 874명 - 사무·시설관리 108명 - 전문조사직 76명 - 교육·서비스직 106명 - 기타 89명
2022년	1,749	454	1,295	903	922	1,286명 취업 - 보안직 972명 - 사무·시설관리 108명 - 전문조사직 36명 - 교육·서비스직 102명 - 기타 69명
2023년	1,803	334	1,469	903	953	1,347명 취업 - 보안직 1,042명 - 사무·시설관리 118명 - 전문조사직 27명 - 교육·서비스직 102명 - 기타 60명
2024년	1,860	300	1,560	903	953	1,435명 취업 - 보안직 1,115명 - 사무·시설관리 136명 - 전문조사직 81명 - 교육·서비스직 64명 - 기타 39명

※ 자료: 경찰청

-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컨설팅 실시인원은 1,742건에서 1,860건으로 증가했고, 대상 별로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1,169건에서 1,560건으로 증가함.

- 향후에는 건강 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퇴직 이후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약된 예산 가운데 컨설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전직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 예전 치안 센터 건물을 활용하여 현재 전직지원센터가 위치한 곳 외의 장소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 신규 도피사범의 급증(85.7% ↑)으로 송환율은 '23년 91.7%에서 '24년 72.6%로 하락하였고, 송환 실적의 약 80%가 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에 집중되며, 14개국은 송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경찰청은 전담 기능 강화, 송환 예산 확대, 미송환국 대상 협력채널 구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은 인터폴 국제기구와 해외 법 집행기관 등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파견 경찰관 제도운영을 통해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및 해외거점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은 57억 9,400만원이며, 이 중 95.4%인 55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400만원(4.6%)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외치안협력강화	5,794	5,794	-	796	-	6,590	6,326	-	264	7,969

※ 자료: 경찰청

나.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해외 주요사건 공조 활동 예산은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와 보이스포싱 등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편성 예산 5억 2,300만원 중 총 5억 2,000만원을 집행(99.4%)하였음.

<2024년도 해외 주요사건 공조활동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외 주요사건 공조활동	523	523	-	-	-	523	520		2	522
일반수용비	19	19				19	19		0	19
임차료	30	30				30	29		1	30
국외업무여비	447	447				447	446		1	447
사업추진비	26	26				26	26		0	26

※ 자료: 경찰청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사업성과 측면에서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은 목표치(437명) 대비 158%(691명)로 초과 달성했으나, 송환율은 전년도 91.7%(470명/512명)에서 72.6%(691명/951명)로 19.1%p 감소하였음.

<2022~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달성도>

(단위: 명)

성과지표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명)	목표	391	405	437	최근 3년간 국외도피사범 평균 송환 인원 대비 5% 상향된 목표치	국외도피사범 송환 인원(명)
	실적	403	470	691		
	달성도	103%	116%	158%		

※ 자료: 경찰청

- 기존 성과지표인 송환실적으로 볼 때, 동 사업은 매년 목표달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2024년 158% 달성), 이는 국외 도피사범이 늘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사업의 성과와는 괴리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찰청은 성과지표를 송환실적에서 ‘송환율’로 변경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외도피사범의 증가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형벌 회피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어, 법치주의 기반 훼손 및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송환율의 지속적 하락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됨.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현황>

(단위: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국외도피사범 신규 발생	943	953	549	512	951
국외도피사범 국내 송환	271	373	403	470	691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2024년도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하락에 대해, 2024년도 송환실적 자체는 전년 대비 47.0% 증가한 역대 가장 많은 691명으로 최대이지만, 2024년 신규 해외 도피 사범이 전년 대비 85.7% 증가(512명 → 951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송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송환 인원이 증가하였고,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역대 최다 송환 성과를 달성한 것은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2020년과 2021년에도 국외도피사범 발생 인원이 900명을 초과한 바 있으며, 최근 범죄의 초국경화 양상과 해외 거점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외도피사범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단순한 송환 인원 증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체계적인 방식으로 송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 제도적·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2023년 10월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라, 시도청 및 경찰서 단위 외사 부서가 폐지되고 국제공조담당관실이 송환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국제공조 수요 확대에 부합하도록, 국제공조 담당 기능의 전문화 및 역량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특히 국외도피사범 증가와 범죄 초국경화 추세를 감안할 때, 실질적 국제공조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송환업무 인력 보강, 전문 인력 양성 등 기능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함.

<2023년도 경찰청 외사 기능 조직개편>

구 분	폐지 부서 및 감축 인원
경찰청	○ 외사국에서 국제협력관으로 축소 개편 - 총 85명에서 36명이 감축되어 49명으로 정원 직제 ○ 3과 8계에서 2과 5계로 축소 개편 - 외사기획정보과 및 소속 3계 폐지, 인터폴국제공조과 소속 해외안전계 폐지 ○ 2024년부터 인터폴공조계(11명)에서 인터폴 국가 공조 업무를 전담 수행
시도 경찰청	○ 6개 청 외사과 폐지 (과장급 6명 감축) ○ 17개 청 외사계 폐지 (계장급 23명 감축, 실무 인력 69명 감축) - 인터폴 국제공조팀 인력 29명은 7명이 감축된 후 그 소속이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소속 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로 편입
경찰서	- 모든 경찰서 외사계 폐지 (계장급 139명 감축)

※ 자료: 경찰청

- 둘째, 최근 3년간 송환 실적은 연평균 31.8% 증가한 반면, 신규 도피 인원은 연평균 39.5% 증가하여 성과지표 달성의 구조적 어려움이 확인되는바, 2025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외 출장 확대, 협조국 다변화 등 정량적·정성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2025년도 송환 출장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억 7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24년 예산집행률이 99% 이상이었음을 감안할 때,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한 실효적 지원 방안이 요구됨.¹²⁾

12)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1~12월, 국외도피사범 송환 예산 부족 등으로, 62명의 국외도피사범을 호송관 파견 없이 현지 경찰주재관 협조하에 피의자 자진 입국 방식으로 송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항공운임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주·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예산 문제로 호송관 파

□ 셋째, 최근 5년간 송환 대상국 중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에 전체 송환실적의 약 79.6%가 집중되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와 멕시코 등 일부 중남미 국가의 송환율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¹³⁾

<최근 5년간 국가별 국외도피사범 송환 현황>

(단위: 명)

년도	총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기타 (43개국)
'24년	691	200	109	83	55	49	55	20	11	10	14	85
'23년	470	154	102	57	44	22	18	6	2	3	4	56
'22년	403	94	96	61	42	26	13	9	1	5	1	55
'21년	373	93	102	32	19	18	16	4	4	10	6	71
'20년	271	64	52	27	49	8	21	7	5	3	7	21

※ 자료: 경찰청

<최근 5년간 국가별 국외도피사범 신규 도피 현황>

(단위: 명)

년도	총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기타 (57개국)
'24년	951	227	174	138	86	123	47	22	10	20	16	88
'23년	512	149	98	63	59	21	28	7	2	5	34	46
'22년	549	192	102	63	41	28	42	8	2	5	3	63
'21년	953	270	124	92	56	48	144	31	7	13	11	157
'20년	943	365	201	59	75	37	37	20	7	13	16	113

※ 자료: 경찰청

견이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

13) 총 도피 국가는 67개국인데 반해, 실제 송환이 이루어진 국가는 53개국으로, 총 14개국(가나, 세네갈 등)이 미송환 국가에 해당함

- 일부 국가에 국외도피사범이 집중적으로 체류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845명의 도피사범이 주요 아시아 8개국 이외의 국가로 도피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어, 송환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이를 위해 미송환 또는 송환율이 낮은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 채널 구축,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각 국가의 법·제도 및 정치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조전략 수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 기동력 강화(4231-311)

- 2024년 연초부터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기 위해 일반승합(특장) 차량 330대에 대한 계약을 2023년 11월 21일에 체결하고, 2024년 2월과 3월에 동 차량들을 인도받았는데, 계약을 체결한 2023년 11월 21일은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2023년 12월 21일 이전으로, 동 계약 절차는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이 같은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경찰 기동력 강화 사업의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의 예산 계획 변동이 많았고, 반복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시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예산 계획에 따른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은 노후 경찰차량 교체 및 순찰차·업무차량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 2024년 예산액 914억 5,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5억 7,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40억 3,600만원 중 99.5%인 935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3,200만원(0.4%)을 이월하였으며 1억 7,200만원(0.1%)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기동력강화	91,458	91,458	2,578	-	-	94,036	93,532	332	172	88,757

※ 자료: 경찰청

나. 예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 필요

□ 경찰청은 2024년 예산을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을 위해 특장 일반승합 차량을 구매할 계획을 추진했는데, 기동순찰대가 2024년 연초부터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 11월 21일에 기동순찰대에 활용될 승합차량(특장) 33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2월과 3월에 차량을 인도받음.

○ 다만,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4년 예산안에는 특장 일반승합 차량 예산이 140대로 편성되어 있었음. 이를 고려하면, 기동순찰대 운영을 위한 차량 계약은 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2023년 11월 21일에 체결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3조, 「국고금 관리법」 제20조¹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집행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 같은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동순찰대 승합차량(특장) 계약 체결·공급 현황>

구 분	기동순찰대 승합차량(특장) 330대 계약 체결일	2024년 예산 국회 확정일	기동순찰대 승합차량(특장) 공급일
내용	2023년 11월 21일	2023년 12월 21일	222대 : 2024년 2월 7일 108대 : 2024년 3월 4일

※ 자료: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14)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경찰 기동력 강화 사업 중 차량을 구매하는 내용의 내역사업에는 노후차량교체 사업과 증차 사업이 있는데, 각 내역사업은 집행 과정에서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이 변경됨.

○ 내역사업인 노후차량 교체 사업은 예산 805억 3,000만원 중 746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1,828대 구매를 계획했으나, 실제 구매한 차량은 1,556대이고, 구매한 차량 중 당초 계획에 포함된 차량은 1,361대임.

예산 계획 보다 적게 구매한 차량에는 전기승용차(337대→75대), 전기중형순찰차(217대→181대), 수소전기순찰차(45대→36대), 112중형순찰차(633대→580대), 일반승합차량(427대→375대), 이륜자동차(110대→60대) 등이 있음. 예산 계획 보다 많이 구매한 차량에는 SUV다목적순찰차(순증 100대), 고속순찰차(32대→70대), 암행순찰차(1대→23대), 화물자동차(10대→39대) 등이 있음.

○ 내역사업인 증차 사업 예산은 10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158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270대 구매를 계획했으나, 실제 구매한 차량은 388대이고, 구매한 차량 중 당초 계획에 포함된 차량은 176대임.

예산 계획 보다 적게 구매한 차량은 112중형순찰차(58대→36대)와 일반승합차(72대→미구매)가 있고, 예산 계획 보다 많이 구매한 차량에는 일반승합차 특장 차량(140대→330대), 고속순찰차(순증 19대), 암행순찰차(순증 3대)가 있음.

< 2024년 경찰 차량 노후차량 교체·증차의 예산 집행 현황 >

구분	차종 차형	예산	집행	집행-예산 차이	사유(경찰청)
노후 차량 교체	순찰차량 교체	928대 455억 3,400만원	990대 496억 4,000만원		
	전기중형 순찰차 (친환경)	217대×6,360만원 = 138억 600만원	181대×6,900만원 = 125억 7,000만원	△36대 △12억 3,600만원	예산편성단가보다 구매단가가 높은 상태로 구매했고, 나머지 예산은 다목적 순찰차 구매
	수소전기 순찰차 (친환경)	45대×7,300만원 = 32억 8,500만원	36대×8,500만원 = 30억 6,900만원	△9대 △2억 1,600만원	
	112중형 순찰차	633대×4,200만원 = 267억 8,800만원	580대×4,200만원 = 240억 9,900만원	△53대 △26억 8,900만원	
	고속순찰차	32대×5,000만원 = 16억원	70대×5,800만원 = 40억 8,100만원	38대 24억 8,100만원	고속순찰차 노후 차량 교체가 시급하여 중형순찰차를 대체하여 추가 구매
	암행순찰차	1대×5,500만원 = 5,500만원	23대×5,900만원 = 13억 6,100만원	22대 13억 600만원	암행순찰차의 노후차량 교체가 시급했고, 부족분은 전기승용차 구매예산에서 충당
	다목적(SUV) 순찰차	-	100대×4,500만원 = 44억 6,000만원	100대 44억 6,000만원	
	기능별 차량	900대 349억 9,600만원	566대 249억 6,200만원		
	전기승용	337대×4,550만원 = 153억 4,400만원	75대×5,900만원 = 44억 6,900만원	△262대 △108억 7,500만원	특장승합차(기동 순찰대), 다목적 순찰차, 암행 순찰차 구입이 시급했음
	수소 전기버스 (친환경)	3대×7억 3,000만원 = 21억 9,000만원	3대×7억 3,700만원 = 22억 1,000만원	- 2,000만원	
	일반승합	427대×3,280만원 = 140억 1,200만원	375대×4,600만원 = 143억 5,600만원	△52대 3억 4,400만원	예산편성단가보다 구매단가가 높은 상태로 구매했고, 부족분은 전기승용 차 예산에서 충당
	화물	10대×3,700만원 = 3억 7,000만원	39대×4,800만원 = 12억 3,900만원	29대 8억 6,900만원	화물차량의 노후차량 교체가 시급했고 부족분은 특수차와 이륜차 예산에서 충당
	특수	13대×1억 1,000만원 = 14억 3,000만원	8대×7,600만원 = 7억 3,600만원	△5대 △6억 9,400만원	노후 화물 차량 교체가 시급했음
	이륜	110대×1,500만원 = 16억 5,000만원	60대×2,700만원 = 15억 7,800만원	△50대 △7,200만원	예산편성단가 보다 구매 단가가 높은 상태로 구매했고 나머지 예산은 화물 차량 구매
	일반승용 (경호)	-	6대×6,200만원 = 3억 7,400만원	6대 3억 7,400만원	노후 경호 차량 교체가 시급했고, 부족분은 전기승용차 예산에서 충당

구분	차종 차형	예산	집행	집행-예산 차이	사유(경찰청)
증차	112중형 순찰차	58대×4,200만원 = 24억 3,600만원	36대×4,200만원 = 14억 9,600만원	△22대 △9억 4,000만원	고속·암행순찰차의 증차가 시급하여 112중형순찰차 증차분 일부를 활용하여 구매
	고속순찰차	-	19대×5,800만원 = 11억 800만원	19대 11억 800만원	
	암행순찰차	-	3대×5,900만원 = 1억 7,800만원	3대 1억 7,800만원	
	일반승합	72대×3,280만원 = 23억 6,200만원	-	△72대 △23억 6,200만원	
	일반승합 (특장)	140대×3,960만원 = 55억 4,000만원	330대×4,000만원 = 130억 3,500만원	190대 74억 9,500만원	기동순찰대 운영을 위해 차량 330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노후차량 교체 예산을 일부 활용함
합 계		2,098대 908억 6,800만원	1,944대 904억 1,900만원		

※ 자료: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이에 대해, 경찰청은 노후 차량 중 고속·암행 순찰차량, 화물 차량의 교체가 보다 시급했고, 기동순찰대 운영을 위한 일반승합 (특장) 자동차가 필요했으나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리고 경찰청은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집행 시기 사이에는 1년여는 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시시각각 변하는 치안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 그러나, 노후차량 교체사업 예산의 25%, 증차사업의 35%를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여 그 규모가 크고,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의 차이는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노후차량 교체의 시급성 순서에 대한

판단은 사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편성 당시에 충실히 계획하고, 예산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장비관리유지(4231-314)

○ 경찰청은 전자충격기 국산화 사업의 실패 원인과 후속 조치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성능기준의 명확한 설정과 계약체결 이전의 검증절차를 제도화하고, 검수·평가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장비 국산화 기술의 축적·활용과 외산 도입에 따른 예산부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조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장비관리유지’ 사업은 경찰의 현장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고 전시 증원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무기·장구를 비축하며 경찰 장비 운용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394억 1,100만원이며, 이 중 98.1%인 386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0.1%)을 이월하였으며, 6억 9,500만원(1.8%)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비관리유지	38,189	38,189	1,222	-	-	39,411	38,668	49	695	43,699

※ 자료: 경찰청

나. 장비구매 관련 조달과정 투명성과 명확성 제고 필요

□ 경찰청은 2024년 동 사업에 전자충격기 구입 예산 27억 5,500만원 (1,620정 × 170만원) 편성하고 미국산 테이저7 구입을 위하여 27억 5,500만원(1,043정 × 266만원)을 집행하였음.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R3) 개발사업을 통하여 전자충격기 국산화를 시도하였으나 개발이 끝난 이후 제품구매단계에서 납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계약이 무산되었고 2023년과 2024년 예산상 금액보다 100만원 가까이 비싼 미국산 테이저7을 구입하게 된 것임.

<최근 5년간 전자충격기 관련 예산집행 현황>

구 분	본 체							
	2021	2022		2023		2024	2025	
종류	X26P	R3		테이저7			구매 진행 중	
구매수량	1,202정	2,755정		1,220정		1,039정		
구매단가 (만원)	232	95		246		266		
예산 (백만원)	2,755	2,755		2,755		2,755	5,610	
실집행 (백만원)	2,785	2,700		2,635		2,755	구매 진행 중	
구 분	카트리지							
	2021	2022		2023		2024	2025	
종류	X26E-P	R3	X26E-P	X26E-P	테이저7	X26E-P	X26E-P	테이저7
구매수량	53,104발	83,300발	117,634발	127,537발	15,780발	201,100발	120,000발	95,000발
구매단가 (만원)	4.3만원	1.2	3.95	4.35	3.7	4.6	5.1	4.3
예산 (백만원)	2,300	5,699		6,190		9,285	10,497	
실집행 (백만원)	2,289	5,627		6,136		9,172	6,098	
예산합계 (백만원)	5,055	8,454		8,945		12,040	16,107	

※ 자료: 경찰청

□ 한국형 전자충격기(R3) 개발사업은 치안산업육성 및 기존 수입 장비의 국산화를 목표로 경찰청의 수요신청을 반영해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이 투입된 산업통상자원부 R&D 과제로 시작함. 2년의 개발기간과 1년 4개월의 성능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 경찰청은 R3 본체 2,755정과 카트리지 83,300발의 구매계약(계약금액 36억 7,970만원)을 체결하였으나, 2023년 7월과 10월 실시된 최종 납품검사에서 두 차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같은 해 12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및 도입 추진 경과>

구 분	기간	내용	예산
R&D 단계	2016.7~2018.9	산업부 R&D 과제로 개발	(산업부) 13억5천만원
성능검증	2020.3~2021.7	6차례 전수검사 (불량률 90%→0%)	
구매계약	2022.11.10	본체 2,755정, 카트리지 83,300발 계약	(경찰청) 36억7,970만원
납품검사	2023.7월·10월	최종 납품검사 2차례 부적합	
계약해지	2023.12	계약해지 및 소송 진행 중 ¹⁵⁾	대금청구 소송

※ 자료: 경찰청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5) 2022년 11월 체결된 한국형 전자충격기 사업은 총 36억 7,970만 원 규모로, 이 중 80%인 29억 4,376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20%인 7억 3,574만 원은 이월하여 2023년 국고로 반환됨. 경찰청은 계약 해지로 인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고, 지급한 선금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환수받을 예정임. 참고로 현재 1심 원고(납품업체) 패소(2025.6.25.).

이로써 2016년부터 추진된 전자충격기의 국산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고, 해당 업체는 경찰청이 계약체결 이후 사후적으로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성능 검사기준¹⁶⁾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23년, '24년에 미국산 테이저⁷을 구매함으로써, 국산 제품 대비 높은 단가로 장기적 예산부담이 우려되는 상황¹⁷⁾임.

- 성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를無理하게 구입해서도 안되지만, 사전에 성능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납품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공공조달 계약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경찰청은 이러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달계약 체결 전부터 일관된 성능 기준을 수립하고 명문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2년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매계약은 완성품의 검증기준이 계약서

16)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규격서에 없는 성능검사 기준(① 0.3mm 동판에 전극침 박힘, ② 발사 각도(초고속카메라), ③ 전력값 3W 적용)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0.1mm 동판은 개발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0.3mm 정도 돼야 패딩 같은 겨울옷을 관통할 것으로 판단해 기준을 정했다.”라고 보도(이데일리, 「[단독]8년 개발한 K-전자충격기, 무산되나...외산 테이저건 구입 추진, 국내 업체 “검사 기준 바뀌며 통과 어려워져”.(2023.10.26.).

17) 경찰청이 현재 보유한 전자충격기 총 13,694정 중 내용연수가 도과되었거나 단종된 구형 장비는 11,331정으로 전체의 82.8%에 달해, 현장 운용에 필요한 장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X26E 기종(6,421정, 전체의 46.9%)은 본체와 배터리가 모두 단종된 상태로, 2027년까지 전량 신형 제품으로 교체 예정임 경찰청은 2023년 12월 해당 제조사로부터 단종된 구형 배터리 재고 전량(5,659개)을 확보하였으나, 2025년 6월 현재 4,099개만 남아 있으며, 월평균 214개가 소진되고 있음.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훈련 및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자충격기의 정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임.

및 규격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며, 핵심 성능기준인 ‘표적지 도달’(0.3mm 동판 관통) 등은 계약체결 이후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됨.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제조사와 서면 합의를 거쳐 검사했다”고 밝혔으나, 당초 경찰규격서에 주요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검사 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납품검사에서 불합격 후 제조사에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로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임

<한국형 전자총격기 구매규격서와 서면합의 납품검사 기준 비교표>

연번	검 사 항 목	규격서	서면 합의 기준
1	실린더 개폐 내구성	3연발, 가능 실린더 정상 회전	실린더 7,500회 반복 개폐 후 발사시 성능검사 기준(11번) 충족
2	전극침 간극	$\pm 2.5^{\circ}$ 이내 각도로 발사	
3	스턴 기능 작동	정상 작동	스턴기능 작동 시 라이트·스파크 및 소음 발생
4	실린더 동선 절단	실린더 회전 시 카트리지 동선 절단	
5	안전장치	안전장치 탑재	방아쇠 당기면, 안전모드 미발사 / 발사모드 발사
6	실린더 작동	실린더 정상 회전	방아쇠를 당긴 뒤 놓으면 실린더 정상 회전
7	레이저포인터 작동	2개 레이저포인터 정상 작동	상·하부 레이저 포인터가 표적 위에 각 1개의 빛으로 표시
8	표적지 도달	전극침 정상 발사	4.5m 거리에서 발사된 전극침이 0.25~0.3mm 동판 표적지에 도달해 박힘
9	와이어 단락	전극침 정상 발사	4.5m 거리에서 발사된 전극침이 와이어 단락 없이 표적지 도달

「경찰장비관리규칙」 18)은 성능형 규격의 경우 물품의 기능과 성능만을 표시하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화학적 시험을 실시하고 (제47조), 기술적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제48조)하고 있음. 또한, 제46조는 규격서 작성 시 국가규격(KS) 또는 국제표준을 인용하거나, 적절한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구매계약 과정에서 사전 시험과 기술검토, 표준화된 성능 기준을 명확히 규격서 등에 반영하였다면, 계약 이후의 해석 차이나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경찰청은 향후 장비 조달계약 시 성능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1조¹⁹⁾에서 규정하고

18) 「경찰장비관리규칙」 제42조(규격의 작성형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형식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설계형 규격은 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조·성질(물리 및 화학적)·무게·치수 등 설계상 제원과 생산방법 및 과정 등을 명시하여 작성
2. 성능형 규격은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제작자에게 일임하고 물품의 기능과 성능만을 표시하여 작성

제47조(분석 및 시험) ① 규격작성기관의 장은 규격을 작성하며 이화학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성품 또는 시제품 등의 화학·물리·기능·내구·환경 또는 신뢰도 등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시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일부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제작국(제작사)의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순 기능 품목은 장비부착 시험만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석 및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분석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경우에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거나 견본품으로 시험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견본품으로 시험·운용한 후 그 평가 결과를 규격심의 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험·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있는 "구매요구서(안) 사전공개" 제도처럼, 입찰공고 이전에 제안요구성능, 구매시험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성능기준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19)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21조 (구매요구서(안) 사전공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요구성능에 대한 사전검증 및 입찰업체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구매계획에 반영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매요구서(안)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입찰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제안요구성능(비밀내용 제외)
 2. 납품장비 목록 및 구매요구서(안)
 3. 구매시험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성능입증자료 평가 관련사항 포함)
 4. 업체선정 방법, 사업추진 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 등

다. 경찰청 안전제압 장비 도입 관련 전주기 관리 철저 및
검증체계 강화

□ 한국형 전자증거기 개발사업은 국산화와 예산 절감을 목표로 R&D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전반에 걸쳐 요구기술 검증 부족, 실용화 단계의 실패, 계약관리의 미흡, 법적 분쟁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향후 경찰청 R&D를 통한 장비 개발 및 도입 사업추진²⁰⁾ 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 첫째, 장기간의 성능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장비가 납품 직전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R&D 성과물에 대한 검증 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며, 단계별 성능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전수검사 끝에, 2021년 11월(7차) 성능검사에서는 불량률이

- 20)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적정 물리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①전자충격 다단봉, ②전자충격 장봉, ③ 포박 장치(포승줄 발사기) 등 현장지원 장비를 R&D 사업으로 개발 중임.
- 소관사업 :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 시범사업(R&D)
 - 수행기관 : (주)인포스테크놀로지(참여 : 감환경디자인(주), 고려대학교)
 - 수행기간 : '23. 4월 ~ '25. 3월(24개월)
 - 개발예산 : 총 8.25억원

[illegible]

‘90% → 0%’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2년 11월 본격적인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음. 그러나 2023년 7월과 10월 두 차례의 최종 납품 검사에서는 연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는 결국 계약 해지로 이어졌음.

이는 사전 성능검사와 납품 검사 간 평가 기준의 정합성과 절차적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실제 운용에 필요한 핵심 성능이 검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특히 성능 검사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되었고, 평가항목도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이후에야 결정적인 기능 결함이 드러났다는 점은 당시 평가 기준의 실효성 부족과 검증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²¹⁾

향후에는 R&D 결과물이 조달계약 및 현장 납품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기술적 검증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또한, 검증 주체의 독립성과 평가 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성능검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21)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병도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사업의 안전성과 검증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며,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 후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국회의 반복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매 계약을 강행하였고, 이는 결국 최종 납품검사 탈락에 따른 현장 도입 좌초 및 선금 미회수라는 결과로 이어짐.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당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문제점을 반복 제기했음에도 도입을 강행하더니, 결국 장비 도입 실패와 혈세 낭비라는 결과만 남긴 경찰청은 옹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함.(출처: 아시아경제, 한병도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 불발”, 2024.10.11.)

아울러, ‘주요 장비의 국산화’라는 정책적 결과물 도출에 매몰되어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구매계약을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R&D 과제의 성공 여부를 ‘양호’ 판정이라는 형식적 성과로 판단하기보다, 그 결과물이 조달 가능한 수준의 기술 성숙도와 안정성을 확보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는 R&D 및 장기개발 성과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성능 완성도와 현장 적합성, 장비 실용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둘째, 국산화 개발 실패로 인해 고비용의 외산 장비에 다시 의존하게 되면서, 애초의 예산 절감 및 장비 자립화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간 축적된 국산화 개발 기술과 경험이 전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 장비 확보 시 기술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조달과 예산 운용의 중장기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실패 이후, '23년 및 '24년에는 미국산 테이저7 장비를 구매하였으며, 이는 8년에 걸친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외산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단가는 '22년 기준 본체 95만원, 카트리지 1만2천원 수준이었으나,

미국산 테이저7은 '24년 기준 본체 266만원, 카트리지 4만5천원으로 각각 2.8배, 3.7배 높은 가격임

2024년도 전자충격기 관련 예산은 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 (▲31억원) 이상 증가한 상황이며, 2025년에는 본체 56억1천만원, 카트리지 104억9천만 원 등 총 161억 원이 편성되었음. 이러한 예산 증액은 노후 장비 교체의 시급성과 대응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나,

국산화 실패로 인해 고가의 외산 장비 도입이 불가피해진 상황은 향후 예산 소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 부담까지 감안할 때 경찰 장비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²²⁾

경찰청은 기존에 개발된 한국형 전자충격기 관련 기술과 축적된 개발 경험이 전면적으로 사장되지 않고 향후 유사 장비 개발이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중장기적 장비 확보 전략 수립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장비 개발사업의 경우 R&D 기획부터 연구개발, 실용화, 구매·보급까지 전 과정이 다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22) 미국산 테이저건의 시장 지배력과 최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 232만 원이었던 구매단가가 2024년에는 266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가 상승이 예상됨.

한국형 전자충격기 사업은 당시 수요제기부터 연구개발 실용화, 장비구매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담당 부서 및 절차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특히 기획·R&D 부서에서 설정한 개발 목표가 실용화 및 조달 단계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각 단계별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진 결과, 성능검증과 현장 도입 사이의 괴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²³⁾

또한, 해당 사업은 R&D(2016~2018년), 성능검증(2020~2021년), 구매계약(2022년), 납품 검사(2023년)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업담당자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핵심 정보의 단절²⁴⁾, 정책 판단의 일관성 부족, 사후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동반된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복합적인 기술개발이 수반되는 경찰 장비 사업의 경우, 단계별 사업 관리를 프로젝트 단위로 통합 운영하거나, 전담조직 및 책임자 지정 등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3) 경찰청에서는 당시에는 R&D 성과를 현장 보급과 연계하기 위한 규격, 성능검증, 기술 고도화 등 체계적 절차가 부재하였고 이후 안전제압장비 도입을 위해 실용화 및 장비규격 관련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24) 경찰청은 전기자극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기준으로 0.3mm 동판을 도입한 구체적인 이유·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이와 같은 상황은 성능 목표와 검증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및 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사업 전반의 객관적 검증과 책임 추적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기준 설정 과정과 그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참고자료]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제원 현황

구 분	사진	제원	
테이저 X26E		무게	355g (카트리지 2발, 배터리 무게 포함)
		전장	200mm
		발사방식	단발
		레이저포인터	1개(상부)
		유효/최대사거리	6.5m
		스턴기능	카트리지 장착 시 스턴 불가
		생산/구매년도	'03년 ~ '13년/'04~'14년(단종)
		단가	본체(단종) 127.4만원('14년) X26카트리지 5.2만원('25년) 배터리(단종) 8.3만원('24년)
테이저 X26P		무게	487g (카트리지 2발, 배터리 무게 포함)
		전장	193mm
		발사방식	단발
		레이저포인터	1개(상부)
		유효/최대사거리	6.5m
		스턴기능	카트리지 장착 시 스턴 불가
		생산/구매년도	'13년 ~ '18년/'15년 ~ '21년
		단가	본체(단종) 225만원('21년) X26카트리지 5.2만원('25년) 배터리 13.9만원('25년)
R3		무게	380g (카트리지 3발, 배터리 무게 포함)
		전장	181mm
		발사방식	3연발
		레이저포인터	2개(상·하부)
		최대사거리	5.5m
		스턴기능	카트리지 장착 시 스턴 불가
		생산/구매년도	'22년
		단가	본체 98만원('22년) 배터리2 1.2만원('22년) 카트리지
테이저 7		무게	485g (카트리지 2발, 배터리 무게 포함)
		전장	189mm
		발사방식	2연발
		레이저포인터	2개(상·하부)
		유효/최대사거리	7.5m
		스턴기능	카트리지 장착 여부 무관 스턴 가능
		생산/구매년도	'18년 ~ 현재/'24년 ~ '25년
		단가 ('24년)	본체 266만원('24년) 카트리지 4.5만원('24년) 배터리 12.3만원('24년)

3.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4431-613)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 사업은 연구기관 단계 최종 예산 집행률이 77.5%로 낮은 수준에 그친 만큼, 경찰청은 향후 R&D 사업 추진 시 연구기관 단계의 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관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 사업(R&D)은 화재 현장 등에서 위해 기체를 사전에 식별해 초동 대응 인력의 피해를 줄이고, 유증 확보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93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이며, 2024년 예산 1억 7천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R&D)	170	170	-	-	-	170	170	-	-	-

※ 자료: 경찰청

나. 연구기관 단계 최종 집행 저조 문제

- 본 사업을 통해 전국 경찰서에 기체분석 장비 33대를 배부하고, 치안정책연구소 내 기체분석실을 구축하는 등 현장 적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무 수사에서의 활용도 확대됨.²⁵⁾ 2022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분석기술에 대한 공인 인증을 획득하여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24~2028년 AI 기반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이 후속으로 추진 중임.

<동 사업 연구기관 단계 최종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과제명	2024년 관련 사항						
			전년도 이월 (A)	2024년 총연구비 (B)			연구비 현액 (C=A+B)	2024년 말 최종 집행액 (D)	연구비 현액 대비 집행률 (D/C)
					국비 지원액	국비 지원외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R&D)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테러 재난 긴급기체 포집분석 시스템 개발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45	182	170	12	227	176	77.5%
		소계	45	182	170	12	227	176	77.5%

※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5) 활용 사례(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년 4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식당 내부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 발생
- 감정 결과,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기체 시료를 포집·분석하여 등유 성분이 검출됨을 확인하여 방화에 의한 고의적 화재임을 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송부
- ⇒ 기체분석 결과가 유죄 선고의 증거로 활용되어 최종 징역 4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305)



휴대용 기체포집기

- 다만, 사업 종료 연도인 2024년 연구기관 단계 집행률은 77.5%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경찰청은 위해기체 확산예측 소프트웨어와 현장 운영 전자 매뉴얼 개발 과제를 담당한 연구기관이 계획보다 조기에 과제 목표를 달성(2024년 4월)해 연구활동비와 실험실 운영비를 절감한 결과라고 설명함.²⁶⁾
- 사업목표의 조기 달성 자체는 긍정적이나, 종료 연차에 진입하기 전 사업 진척도를 충분히 예측하고 그에 맞춰 예산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었던 점에서 예산관리 측면의 개선 여지가 있음.
- 경찰청 R&D 사업은 통상 ‘출연’ 형태로 이뤄지며 출연금 특성상 집행율과 실집행율은 통상 100%를 달성하고 불용이 없음. 다만 연구진이 실제 사용하는 예산인 실실집행률이 주관 기관과 전문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미흡한 경우가 있음.
- 실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예산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어 주관 기관 및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고, 지난 국회에서도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연구진의 실질 예산집행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을 요구한 바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²⁷⁾

26) 경찰청은 잔여연구비 51백만원에 대해서는 국고 반납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함.

27)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경찰장비개선사업’ 최종집행률 저조

<R&D 사업 집행방식>

구 분	내 용
집행률	(방식) 주관기관(부처청) → 전문기관(과학치안진흥센터 등) 지급
실집행률	(방식) 전문기관(과학치안진흥센터 등) → 연구진 지급
실실집행률	(방식) 통상 국비+민자+지방비+이월금 등을 합한 연구비 총액을 연구진이 사용하는 비율로 집행 실적에 따라 비율 산정

※ 자료: 경찰청

- 특히 2024년이 사업 종료 연차였던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확보된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예산 설계 단계에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인력 구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관리 측면의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경찰청은 장기 연구개발 사업에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단계별·연차별 진척도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구기관 단계의 사업 수행과 예산집행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실제 집행 실적을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비목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중 대규모 전용이나 예산 배정 후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은 범죄예방 기획·운영, 불법 풍속 영업 규제, 민간 총포·화약 안전관리 등 경찰의 전반적 범죄예방·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21억 8,400만원이며 이 중 119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원을(2.3%)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2,184	12,184		±1,982	-	12,184	11,909	-	275	13,088

※ 자료: 경찰청

□ '기동순찰대 운영²⁸⁾' 사업은 2023년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예방 순찰 활동 활성화 및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출범한 기동순찰대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52억 3,700만원 중 50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0%)되고, 2억 1,2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기동순찰대 운영 예산집행 내역>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 도 이월 액	이.전 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동순찰대 운영	5,237	5,237		±1,982		5,237	5,025	5,237	5,025		212	5,595
- 일반수용비 (210-01)	235	235				235	235	235	235			235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83	483				483	474	483	474		9	642
- 특근매식비 (210-05)	2,913	2,913		△1,982		931	769	931	769		162	2,91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		1,707		1,707	1,707	1,707	1,707			521
- 관리용역비 (210-15)	-	-		275		275	254	275	254		21	280
- 기타운영비 (210-16)	272	272				272	258	272	258		14	272
- 국내여비 (220-01)	60	60				60	60	60	60			60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4	34				34	34	34	34			34
- 직책수행경비 (250-02)	50	50				50	44	50	44		6	50
- 자산취득비 (430-01)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588

※ 자료: 경찰청

28) 기동순찰대는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2024년 2월 신설된 조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밀집시설을 중심으로 도보 및 차량 순찰을 통해 가시적 치안 확보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총 2,668명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기동순찰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나. 기동순찰대 신설 관련 면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 비효율 개선 필요

- 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²⁹⁾하였으나,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였음. 특히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동순찰대의 실제 운영 형태와 소요 경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중 대규모 예산 전용이 발생하고 일부 예산은 불용되는 등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짐.

<2024회계연도 기동순찰대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전용	집행액	불용액	비고
2,913	1,982	769	162	

※ 자료: 경찰청

- 2024년 기동순찰대 운영 예산 중 특근매식비(210-05목)는 당초 2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9억 8,200만원이 다른 비목으로 전용되어 예산현액이 9억 3,1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그중 7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200만원을 불용함.³⁰⁾

29) 기동순찰대는 2023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2024년 2월 출범

30) 경찰청은 2023년도 예산편성 시(2024년도 예산), 근무형태(주 5일제) 및 유사 부대(기동대)를

□ 기동순찰대의 특근매식비 예산은 전체 운영 예산의 55.6%를 차지하는 주요 지출항목임에도, 실제 사용률은 26.4%에 불과하여, 당초 편성액 대비 큰 차이를 나타냄.

□ 특히 사업 초기인 2024년 3월부터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와 관리용역비(210-15목)로 각각 17억 700만원, 2억 7,500만원을 조정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기동순찰대 출범 준비 과정에서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됨.³¹⁾

<2024회계연도 기동순찰대 특근매식비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목-세목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4. 3. 29)	특근매식비 (210-05)	275	관리용역비 (210-15)	기동순찰대 청사 환경 관리용역비 재원 마련
세목변경 (‘24. 9. 25)	특근매식비 (210-05)	1,70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기동순찰대 사무공간 개보수 재원 마련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실제 집행 실적을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비목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중 대규모 전용이나 예산 배정 후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기준으로 1인당 주 3회 초과근무를 전제로 2,91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초 계획과 달리 팀 단위로 8시간만 근무하여 초과근무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함.

31) 경찰청은 예산편성 당시 부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기동순찰대 청사 환경관리용역비 재원 및 사무공간 개보수 재원인 시설장비유지비·관리용역비 또한 편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함.

2.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1431-311)

- 경찰청은 2023년과 2024년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점검 결과, 2023년에는 38.1%가 ‘미흡’ 평가를 받고, 2024년 점검에서도 점검대상 순찰팀원의 66%가 ‘미흡’ 평가를 받는 등 일부 인력의 전산 기반 사건처리 역량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5년 6월 ‘형사사법업무의 전면 전자화’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역량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물리력 대응훈련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부정적 평가(53.8%) 결과와 최근 발생한 각종 위기상황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전형 훈련 확대, 제압 기술 및 장비 활용 교육 강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선하고 경찰관의 현장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이후 농촌 등 지역에 위치한 치안센터가 감축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치안센터 670개소 중 상주 근무자가 배치된 곳이 329개소, 활용되지 않는 곳이 233개소인데, 치안센터의 축소는 인구감소 지역의 치안 우려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치안센터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사업은 지역 경찰의 다양한 활동과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289억 1,600만원이며, 이 중 97.6%인 282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400만원(1.8%)을 이월하였으며, 1억 7,900만 원(0.6%)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27,920	27,920	996	±14	-	28,916	28,213	524	179	34,250

※ 자료: 경찰청

나. 지역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대응 관련 전산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경찰청은 2024년 11월 전국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팀장 전원 및 시스템 장기 미활용 중인 팀원 약 7,600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찰 전산상 사건처리·지휘역량 특별점검'을 실시함. 이번 특별점검은 2023년 9월~10월 첫 점검³²⁾ 이후, 교육을 통한 개선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됨.
- 지역경찰 업무 대부분이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³³⁾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전산 활용 능력은 기본적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역량이라 할 수 있는데, 2023년 전산 활용실태 점검 결과, 주어진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지역경찰은 점검대상 중 61.9%에 불과하였고, 38.1%는 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미흡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지역경찰 전산 활용실태 점검 결과>

합계	정상 처리	미흡 처리
924명(100%)	572명(61.9%)	352명(38.1%)

※ 자료: 경찰청

32) 지역경찰 전산 활용실태 점검

- ▶(기간·점검단) 2023. 9. 11.~10. 20. 총 131명(본청 11명, 시·도청 120명)
- ▶(점검 관서) 전국 전 경찰서 소속 지역관서 중 280개 지역관서 점검
- ▶(점검 대상) KICS 미활용자 924명

3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 간 사건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하고 연계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핵심기능으로 ① 사건 정보 전자 송수신 ② 전자문서 작성 및 결재 ③ 사건 처리 이력 자동 기록 ④ 사건정보 통합 검색 기능 ⑤ 통합 사건 진행 관리 ⑥ 기관 간 사건 처리 자동 연계 ⑦ 보안 및 권한 관리 기능이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계급별·급지별 역량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50대(45.5%)와 경감(49.3%)의 정상처리 비율이 가장 낮았음.

<2023년 지역경찰 KICS 활용 역량 연령대별·계급별·급지별 현황>

구 분	KICS 정상처리율(%)
연령별	30대(75.5%) > 20대(74.5%) > 40대(65.3%) > 50대(45.5%)
계급별	경사(81.2%) > 순경(71.6%) > 경장(67.8%) > 경위(53.5%) > 경감(49.3%)
급지별	1급지(66.3%) > 2급지(60.6%) > 3급지(49.0%)

※ 자료: 경찰청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전산시스템 활용역량 부족은 적정절차 누락 등 부실처리가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 등 각종 규정의 적용이 곤란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실태조사 후 경찰청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개월간 교육을 실시했으나, ‘KICS 미접속·미작성 순찰팀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11월 점검³⁴⁾에서도 순찰팀원의 66%, 팀장의 82.3%가 ‘미흡’으로 평가되어 전산 기반 사건처리 역량 미흡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4) 점검 개요

- (기간·점검단) '24. 11. 4.~15. <2주간>, 점검단 총 532명
- (점검사항 및 대상) 총 7,626명 실지점검 및 관서별 노력도 확인

점검사항	점검대상	근거 및 기준
사건 처리역량	순찰요원 2,995명	'24. 2~9월간 KICS 미접속·미작성자*
사건 지휘역량	팀장 전원(4,631명)	KICS 결재·지휘 책임
관서별 노력도	전 경찰서장·과장	감사예고 이후 관서별 자체 교육 등

* 전년도 점검 관련 교육('23. 11~'24. 1월) 이후, 2024. 9. 23. 감사예고 시까지 8개월간 KICS에 아예 한 번도 접속하지 않거나 직접 사건처리 내역이 전무한 순찰요원

<2024년 지역경찰 전산상 사건처리 점검 종합결과>

구 분	우수	미흡
순찰팀원 사건처리 역량	34%	66%
순찰팀장 사건지휘 역량	17.7%	82.3%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지역경찰 사건처리·지휘역량 자격인증제 도입, 팀장 자격 요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해 보임. 또한, 미흡 대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보직 해제 검토, 소속 경찰서장 주의·경고 등 징벌적 성격이 강하여 전산 업무역량 부족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제재에 그칠 우려가 있음.
- 2024년 9월 개통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과 2025년 6월 전면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업무의 완전 전자화’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 활용역량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지역 경찰의 전산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할 필요가 있음.³⁵⁾

35) 경찰청은 '25년도 지역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활용능력·법률지식을 평가하여 순찰팀장 보임자격을 부여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중이라 설명함.

- (순찰팀장 보임자격) 순찰팀장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순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실무지식 및 업무시스템 활용능력 평가를 2차에 걸쳐 실시(△1차: '25. 4. 17. ~ 5. 16. △2차: '25. 6. 23. ~ 7. 11.)
- (교육) 관리자 대상 교육훈련은 2→3개, 순찰팀원 대상 교육훈련은 3→11개로 확대하고 15개 교육과정 중 10개 과정에 '업무시스템 활용역량'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
- (현장실습센터 구축) 업무시스템 활용역량 관련 교육이 가능한 IT실습실을 갖춘 현장실습센터를 구축하여 역량강화 노력

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의 실효성 점검 필요

- 2022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흥기난동 사건³⁶⁾, 2025년 2월 광주 경찰관 피습사건³⁷⁾, 2025년 5월 파주 가정폭력 출동 경찰관 피습 사건³⁸⁾, 2025년 8월 인천송도 사제총기사건³⁹⁾ 등은 비살상무기의 효과적인 사용 시점, 실탄 사용기준의 적용,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 및 대응 전략 등에서의 과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 역량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최근 5년간 경찰관 공상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범인피습	질병	교통사고	안전사고	기타
계	7,564	1,977	326	1,273	3,988	0
'20년	1,589	444	89	283	773	
'21년	1,189	288	88	204	609	
'22년	1,597	360	68	260	909	
'23년	1,618	435	50	277	856	
'24년	1,571	450	31	249	841	

※ 자료: 경찰청

- 36) 2022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흥기를 들고 위협하던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지만 그가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은 뚫지 못했다.(전민일보, “겨울 패딩 못 뚫은 테이저건… 실효성 의문 제기“, (2022.12.19.))
- 37) 2025년 2월 26일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을 흥기로 공격해 경찰이 실탄을 사용, 피의자가 사망하고 경찰관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현장 대응의 적절성, 위협 상황에서 경찰 대응 체계에 대한 논란 발생.(KBS, “광주 도심 한복판서 경찰관 흥기 피습…피의자 실탄 맞고 사망”,(2025.02.26))
- 38) 2025년 5월 22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남편에게 흥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고, 가해 남성도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사건(동아일보, “가정폭력 남편, 출동 경찰에 칼부림…경찰관 3명 부상, 피의자 자해“, (2025.05.22))
- 39) 2025년 7월 20일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된 사건으로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사건임.(조선일보, “'총기 살인' 신고 70분 뒤 특공대 진입… 경찰서장은 현장도 안 갔다“, 2025.07.27).

□ 2022년 동대문구 사건과 2025년 광주 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겨울철 두꺼운 패딩을 착용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이 사용되었으나,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두꺼운 피복으로 인해 제압 효과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⁴⁰⁾, 이미 2022년 사례를 통해 겨울철 테이저건 운용의 한계가 확인되었음에도, 2025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한 점은 현장 대응 매뉴얼과 교육 체계가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2020~2024년) 테이저 등 물리력 사용 현황>

(단위: 건)

사용물리력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권총(실제사격)	12	7	13	9	10
권총(경고사격)	12	5	11	11	10
전자충격기(전극침)	193	245	292	281	290
전자충격기(스텐)	52	61	69	117	193
분사기	120	147	212	164	3
경찰봉	2	2	8	27	84
방패	8	9	22	32	33
수갑	5,777	6,311	8,863	13,100	16,423
포승	2	13	10	23	21
신체적물리력	616	477	647	835	1,065

※ 자료: 경찰청

40) 2022년 경기도 안산, 2018년 전북 전주 등에서 패딩을 입은 범죄자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지 못해 권총으로 대응하거나 경찰·시민이 부상한 사례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테이저건의 현장 대응력 보완 및 겨울철 상황에 맞는 복합적 대응(여러 장비와 전술 훈련 병행) 필요"를 강조한 언론기사 다수 보도.(헤럴드경제, "겨울 될수록 효과 떨어지는 테이저건.."실전 방불케 하는 훈련 필요", (2021.12.3.))

- 경찰청은 2023년 '경찰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을 선언하며 중앙 경찰학교에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 마련, 재직경찰관 훈련 확대 (월 1시간→반기 8시간), 12개 신고유형별 '상황기반 현장교육' 도입 등 교육 훈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 2024년부터 신입 경찰관 사격훈련을 기존 290발에서 590발로 확대 하고, 외근 경찰관 특별사격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으며, 특별사격훈련에 총기 숙달훈련 및 시나리오 기반 훈련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음.⁴¹⁾

<2020~2024년 시도경찰청별 전자총격기 등 실사훈련 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자총격기 실사훈련	훈련횟수(회)		연 1발		연 2발		연 3발
	참석 인원(명)		7,146*	64,020	58,083	51,509	59,091
사격훈련	훈련횟수 (회)	정례사격	연 2회				
		특별사격	연 2회				연 4회
	참석인원 (명)	정례사격 ¹	114,524	118,429	119,037	120,034	126,579
		특별사격 ²	-	-	-	-	-

주1: 경감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격훈련 점수는 근무평정 점수에 반영됨.

주2: 외근경찰관(지역경찰·형사·수사·교통외근 경찰 등 상시 권총을 휴대하여 근무하는 부서 근무자) 대상으로 실시하나, 사격훈련 점수는 근무평정점수에 미반영되어 정확한 실시인원 통계가 취합되어 있지는 않음.

※ 자료: 경찰청

4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연 1발이었던 전자총격기 훈련을 2021년 연 2발, 2024년 연 3발로 확대하였으며, 2025년 신입경찰 교육과정에서도 실사훈련 횟수를 1인당 4발에서 7발로 확대하였고 향후 9발까지 늘릴 계획임. 또한, 교육방식도 고정형 표적지가 아닌 보호복을 입고 움직이는 교관을 표적으로 삼아 실사하는 등 실전형 훈련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임.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피습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교육 훈련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현장대응역량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현행 경찰관 물리력 대응훈련의 시간적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상시적 교육 훈련이 위기상황에서의 실질적 현장대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2023년 실시한 '상시교육훈련 제도의 효과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물리력 대응훈련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32명(53.8%)로 긍정적 평가 275명(27.8%)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리력 대응훈련의 현장 활용 기대 정도에 대한 인식>

구 분	물리력 대응훈련	
	빈도(명)	비율(%)
매우 많이 긍정	126	12.7
많이 긍정	73	7.4
조금 긍정	76	7.7
보통	182	18.4
조금 부정	174	17.6
많이 부정	187	18.9
매우 많이 부정	171	17.3
합계	989	100

※ 자료: 경찰청, '상시교육훈련 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효율적 확대 운영 방안 연구'

- 훈련내용의 업무 반영도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510명(51.6%)으로 긍정적 응답 271명(27.4%)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물리력 대응훈련의 현장업무 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

구 분	물리력 대응훈련	
	빈도(명)	비율(%)
매우 많이 긍정	112	11.3
많이 긍정	85	8.6
조금 긍정	74	7.5
보통	208	21.0
조금 부정	189	19.1
많이 부정	165	16.7
매우 많이 부정	156	15.8
합계	989	100.0

※ 자료: 경찰청, '상시교육훈련 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효율적 확대 운영 방안 연구'

- 특히, 현장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력 사용방법과 상황별 대응조치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며, 현장 경찰관의 업무이해와 기술의 습득을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⁴²⁾
- 아울러,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훈련, 물리력 사용 및 신체훈련의 체계적 강화가 미흡하다는 또 다른 연구결과⁴³⁾를 고려

42) 오혜성·오윤성, 「경찰 현장대응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2023.

43) 이재영·김연수,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훈련 개선방안- 신입경찰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경찰학회보, 2023, vol.25, no.5, 통권 102호 pp. 207-236.

할 때, 단순한 훈련횟수 증가보다는 실전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육내용 개선이 필요해 보임.⁴⁴⁾

□ 물리력 대응훈련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부정적 평가(53.8%)가 다소
개선⁴⁵⁾되고는 있지만 최근 발생한 다양한 위기 상황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전형 훈련 확대, 제압
기술 및 장비 활용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경찰관의 현장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4) 2025년 5월 22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습 사건은 실효성 있는 제압에 실패한 대표
적 사례로, 방검복 등 보호 장비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리는 피해가 발
생하였으며, 경찰청의 교육훈련 강화 조치가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45)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4년 경찰청 자체적으로 실시한 물리력 대응훈련 만족도 조사에서* 훈
련이 현장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긍정적 응답(‘매우 만족’,
‘만족’)이 84.6%, 부정적 응답(‘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4.1%로 나타나며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자체 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참고: <경찰 테이저건 교육 현황>

연번	교육기관	교육대상	과정명	교육기간	전자충격기 관련 교육 내용
1	경찰대학	경찰대학생 과정(100명)		4년	△ 전자충격기 이론 및 안전교육 △ 조작 및 격발(실사) 실습 △ 출입문 진입 전술 및 불발 시 삼단봉 이용 타격 교육 ※ 대학생과정 총 9~12시간, 경위공채과정 6시간, 경력채용 과정 3시간
		신임경찰관	경위공채과정(50명)	1년	
			경력채용과정	3개월	
2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	신임순경과정(236명)	38주	△ (1단계) 전자충격기 소개 및 법적근거·안전교육, 기본사격·응용사격·시물레이션 사격, 종합심화 사격(전술사격) △ (2단계) 단계별 종합 FTX 상황훈련 등 ※ 총 21시간, 1인당 7발 실사훈련 실시
3	경찰인재개발원	재직경찰관	현장대응종합훈련과정(28명)	5일	△ 전자충격기 이론 및 안전교육 △ 현장 대응 상황별 실전 실사훈련 ※ 1인당 3발 실사훈련 실시
			물리력대응강사양성과정(10명)	5일	△ 전자충격기 이론 및 안전교육 △ 현장 대응 상황별 실전 실사훈련 ※ 1인당 3발 실사훈련 실시
4	시도청	시·도청 소속 외근경찰관	물리력대응훈련	매년 12시간~16시간	△ 전자충격기 안전교육 및 실사훈련 △ 불발 상황 가정 예비카트리지 신속 교체 △ 방패 등 경찰 장구 활용한 입체적 훈련 진행 ※ 1인당 3발 실사훈련 실시

라. 치안센터 상주근무자 확대 등 활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역경찰관서는 지구대 및 파출소를 의미하고,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OO경찰서 OO지구대(파출소)”임. 치안센터는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명칭은 “ OO지구대(파출소) OO치안센터”임.⁴⁶⁾
- 경찰청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목적으로 지구대·파출소의 인력과 장비를 통합해 특정 지역경찰관서(중심지역관서)에 배치하여 권역 내 112신고 처리 및 순찰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경찰관서(공동체지역관서)는 관서장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교실, 협력단체 합동순찰, 홍보활동 등 공동체 치안활동에 주력하도록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25년 5월 기준 전국 지구대·파출소 2,046개소, 치안센터 670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구대·파출소 중 35.4%인 724개소(중심지역관서 313개소, 공동체지역관서 411개소)를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와 공동체지역관서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경찰관서는 2020년 12월 이후 감소하고 있지 않지만, 치안센터는 2020년 12월 983개에서 2025년 2월 670개로 감소하고 있음.

4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1절 지역경찰관서 제4조(설치 및 폐지), 제2절 치안센터 제10조(설치 및 폐지)

<지역관서 및 치안센터 운영 현황(2020년 12월~2025년 2월)>

구 분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2025년 2월
치안센터 수	983	981	969	744	739	670
운영 중지가 결정된 치안센터 수	12	12	225	5	69	0
신설 치안센터 수	10	0	0	0	0	0
지역관서 수	2,033	2,033	2,042	2,043	2,045	2,045
운영 중지가 결정된 지역관서 수	0	0	0	0	0	0

자료: 경찰청

- 치안센터 670개소 중 상주근무자가 배치된 곳은 329개소이고, 상주 근무자 배치 없이 자율방범대 사무실, 청소년 경찰학교, 피해자 케어센터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곳은 108곳이며,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은 233개소임.

<치안센터 활용 현황(2025년 4월 기준)>

합계	활용 중				미활용
	소계	근무자 단독 배치	근무자 배치 + 타 용도 활용	근무자 미배치 + 타 용도 활용	
670	437	204	125	108	233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하반기 전수점검 이후 단계별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축소되는 치안센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치안수요가 줄어드는 곳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심지역관서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지역에 치안센터에 상주 근무자 배치를 줄이고, 치안센터 감축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치안에 대한 불안을 높이고, 인구감소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치안센터 축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지역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생활안전교통국]

1. 사회적약자보호활동(1132-311)

- 경찰청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리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경찰청은 인력 확충 및 합리적 배치, 법적·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학교폭력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 수가 급증하는 등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방적 개입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사업은 성폭력·스토킹 등 여성대상범죄와 가정폭력·학대 및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추경기준 53억 2,200만원이며, 이 중 92.8%인 49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100만원(7.2%)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5,322	5,322	-	50	-	5,322	4,941	-	381	16,491

※ 자료: 경찰청

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인력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내역사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⁴⁷⁾, 2024년 예산현액 17억 2,000만원 중 15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3%)되고, 1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1,720	-	-	-	-	1,720	1,574			1,720
일반수용비	38	-	-	-	-	38	38		-	38
공공요금	119	-	-	-	-	119	108		11	119
국내여비	1,563	-	-	-	-	1,563	1,428	-	135	1,563

※ 자료: 경찰청

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를 등록·관리해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한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범죄자 개인정보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대상자에게는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음.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공동관리 하여 수행⁴⁸⁾하며 이 중 경찰청은 등록대상자 신규·변경 시 신상정보 접수, 사진 촬영, 시스템 입력, 법무부 통보 및 진위 확인과 주기별 (연 1회) 대면 점검 등의 등록대상자 관리업무를 담당함⁴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신상정보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칙규정으로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자

48)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관리·종료 업무를, 여성가족부는 등록대상자 공개·고지 업무를, 경찰청은 등록대상자 관리를 담당함

4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해당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등록기간 30년), 6개월(등록기간 20년·15년), 1년(등록기간 10년)의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자 소재 불명 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후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함.

-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12월 말 기준 11만 4,913명으로 5년간 4만 4,000여 명(약 62%)이 증가하였고, 등록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장기화되면서 누적 효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연도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인 원(명)	70,001	80,939	91,136	101,071	109,367	115,880

※ 자료: 경찰청

- 그러나 2024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은 251명에 불과하여 1인당 평균 458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효과적인 점검과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수준임. 경찰청의 내부 기준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0명당 1명의 관리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인력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의무위반 건수 역시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

2024년 9월 기준 6,35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2024년 기준 신규제출 위반 1,764건, 변경제출 위반 5,799건, 사진촬영 위반 682건으로 나타남.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의무위반 건수 현황>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입건(건)	4,503	5,458	6,912	8,245

※ 자료: 경찰청

<유형별 의무위반 및 소재불명 현황>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신규제출 위반(건)	1,086	1,232	1,398	1,764
변경제출 위반(건)	3,395	3,861	5,017	5,799
사진촬영 위반(건)	159	365	497	682
소재불명자(명)	132	105	118	158

※ 자료: 경찰청

□ 또한, 성범죄자 등록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재등록되는 사건이 2019년 1,108건에서 2023년 1,42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 1,128건에 달하고 있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재범률을 보여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등록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한 재등록 사건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월
재등록 건수	1,108	1,219	1,106	1,378	1,423	1,128

※ 자료: 법무부

□ 다음으로, 관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관련하여, 2024년 12월 기준 전국 251개 경찰서 중 92개 경찰서(36.7%)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음. 특히 전남청은 22개 경찰서 중 17곳(77.3%), 경북청은 23개 경찰서 중 16곳(69.6%), 강원청은 22개 경찰서 중 13곳(59.1%)에 관리 인력이 없어 지방 경찰서 간 관리인력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시도청별 등록대상자 및 인력 현황>

(기준: 2024.12월,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 대상자	115,880	22,353	7,047	4,896	7,579	3,416	3,345	2,397	518	31,252	3,263	3,625	4,889	3,810	4,147	5,221	6,343	1,779
관리 인력	251	51	17	10	18	9	7	6	1	68	5	8	11	7	7	9	13	4
1인당 등록 대상자	461.7	438.3	414.5	489.6	421.1	379.6	477.9	399.5	518.0	459.6	652.6	453.1	444.5	544.3	592.4	580.1	487.9	444.8

※ 자료: 경찰청

□ 인력 미배치 경찰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 완주 경찰서(229명)로, 관리인력 없이 2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임. 충북 진천경찰서(226명), 경남 사천경찰서(224명), 서울 방배경찰서(207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 등 다수의 경찰서가 200명 이상의 등록대상자를 관리해야 함에도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임.

□ 또한, 인력이 배치된 경찰서 간에도 1인당 관리 대상자 수의 격차가

매우 큼. 경기 양주경찰서는 1명이 708명을 담당하고,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1명이 673명, 대구 성서경찰서는 1명이 647명을 담당하는 반면, 충남 공주경찰서(211명), 전북 정읍경찰서(238명), 전남 나주경찰서(244명)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어 관리 효율성에 큰 차이가 발생함.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등록대상자 4,147명의 관리 인력은 7명에 불과해 1인당 평균 592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목포(627명, 2명 배치), 여수(669명, 2명 배치), 나주(244명, 1명 배치), 광양(300명, 1명 배치)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경찰서에는 전담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황임.

<관리인력 미배치 경찰관서 현황(92개)>

관리인력 미배치 경찰관서 (92개)	
서울	종로 남대문 혜화 방배
부산	중부 서부
대구	중부 군위
인천	강화
세종	세종북부
경기남부	과천
경기북부	가평
강원	연천 동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충북	영동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진천
충남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전북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전남	고흥 해남 무안 장흥 보성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강진 담양 곡성 완도 진도 구례 신안
경북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도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청송 영양 고령 울릉
경남	사천 밀양 거창 합천 창녕 고성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 자료: 경찰청

- 관리인력 불균형은 지역 간 성범죄 예방과 대응 역량의 차이로 이어지며,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사업은 등록대상자의 급증에 비해 관리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은 등록대상자 수, 지역 특성, 관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인력 확충을 통해 성범죄자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업은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2012.6월)」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청소년보호계)가 담당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과 학교 간 가교역할 및 소년범죄 예방·선도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 17억 7,700만원 중 16억 7,200만원을 집행함.

<2024년도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구 분	예산	결산	집행률
1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예방	525	513	97.8
2	117센터 운영	182	161	88.4
3	위기청소년 선도업무 역량 강화	62	61	98.4
4	청소년경찰학교 시설개선 및 유지	805	746	92.6
5	마약 등 청소년 범죄 예방자료 제작	73	72	98.6
6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보호 조사연구	100	90	90
7	학교폭력 피해 전문가 분석제도	30	29	96.7
계		1,777	1,672	94.6

※ 자료: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50)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주요 업무>

- (학교폭력 예방) 주기적으로 학교에 방문, △학생·교사 면담 △학교폭력 현황파악 △예방교육 △신고창구(117 등) 및 대응요령 등 안내
※ 경찰서·교육지원청/학교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 (사안대응) 117·학교·교사 등의 학교폭력 신고(상담)에 대응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하여 가·피해학생 징계·보호방안 논의
※ SPO는 위기청소년 선도·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대응·사후관리 등 재범방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전문인력인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전담, 수사 중
- (소년법 선도) 소년법 대상 경찰단계 선도제도(전문가참여제·선도심사위원회·선도프로그램) 연계,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 등 사안별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 △정보수집 △아웃리치 △소년사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지원기관 연계 등 청소년 비행예방

※ 자료: 교육부

2024년 기준 전국에 1,133명의 SPO가 활동 중이며,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음.

50) 제 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2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도경찰청별 SPO 1인당 담당 학교 건수>

(단위: 개교)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부	경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 수	10.7	9.2	9.4	9.9	9.8	11.2	9.8	10.8	11.4	10.0	10.8	11.1	11.6	12.7	12.3	11.8	12.0	11.9	11.4

※ 자료: 경찰청

<시·도 경찰청별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및 현원 현황>

('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정원	1,130	135	65	49	54	33	32	24	7	166	63	58	43	66	69	73	87	88	18
	현원	1,040	145	61	41	49	30	31	22	7	146	57	58	40	55	67	72	73	74	12
21	정원	1,122	135	65	49	54	29	32	24	7	165	63	58	42	66	67	73	87	88	18
	현원	1,030	142	63	43	50	25	29	22	6	154	52	55	40	54	66	72	75	70	12
22	정원	1,023	133	62	44	48	26	29	22	4	151	55	55	37	58	62	69	78	75	15
	현원	970	133	63	42	42	25	25	20	7	146	48	53	35	50	60	68	69	71	13
23	정원	1,022	133	62	44	48	26	29	21	4	151	55	55	37	58	62	69	78	75	15
	현원	976	134	61	42	43	26	29	21	7	145	51	55	36	47	59	65	68	72	15
24	정원	1,127	149	66	51	55	29	31	23	9	175	64	57	42	63	63	72	78	83	17
	현원	1,133	150	68	47	56	29	32	23	9	185	64	58	42	58	63	71	78	83	17

주: (SPO 1인당 담당 학교수, 현원 기준) '20년도 11.3개교, '21년 11.4개교, '22년 12.7개교, '23년도 12.7개교, '24년도 10.7개교

※ 자료: 경찰청

□ 동 사업은 도입 이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력 부족, 업무 범위 확대, 전문성

약화, 지역별 업무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폭력 예방업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SPO 인력 부족 및 지역별 편차 문제

- 2024년 기준 전국 SPO 인력 1,133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효과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지역별 편차가 커서 서울(9.2개교)부터 충남(12.7개교), 전북(12.3개교) 등 최대 3.5개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우려됨.
- SPO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원에 미달하는 인력이 배치되었으며, 충원율은 92~95% 수준에 머물렀음. 2024년에는 정원 1,127명 대비 현원 1,133명으로 처음으로 정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2024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 10.5개교에서 2023년 2월 기준 12.9개교로 증가하는 추세였던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인력 부족 상황은 SPO의 업무부담을 가중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춘천지역의 경우 80개 학교를 4명의 SPO가 담당하는 등 1인당 20개 학교를 담당하는 때도 있다는 언론 보도⁵¹⁾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⁵²⁾

51) 더퍼블릭, 「"서울 학교전담경찰관 '수사업무 폐지'에 97%가 찬성?... '학폭' 느는데 권한 축소 우려↑"」 (2023.3.13.) 해당 기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3일 학교폭력 근절 기자간담회에서 '춘천지역 80개 학교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4명 뿐'이라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52) 참고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별 의무 배치와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36호),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39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94호),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83호)

(2) 학교폭력 증가 및 저연령화 추세에 따른 예방효과의 실효성 제고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은 2020년 11,331명에서 2024년 20,725명으로 82.9% 증가하였고, 피해자 수도 2020년 27,370명에서 2024년 49,906명으로 82.3%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은 오히려 증가 추세임.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20년	11,331	572	3,014	3,132	4,613
'21년	11,968	858	3,373	3,328	4,409
'22년	14,436	1,399	4,478	3,435	5,124
'23년	15,438	1,703	5,005	3,815	4,915
'24년	20,725	2,123	6,905	5,335	6,362

※ 자료: 경찰청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피해자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불상
'20년	27,370	18,306	5,202	3,256	606
'21년	38,135	26,864	6,729	3,752	790
'22년	43,931	30,460	9,028	3,686	757
'23년	44,380	28,701	10,379	4,470	830
'24년	49,906	30,864	12,677	5,457	908

※ 자료: 경찰청

- 이에 대해 경찰청은, SPO 제도 도입 이후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 활동으로 청소년 관련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2012년 23,877명에서 2024년 20,725명으로 13.2% 감소하였고, 소년범 검거인원은 2012년 107,018명에서 2024년 61,815명으로 42.2% 감소, 소년범 재범률도 2012년 37.3%에서 2024년 23.0%로 14.3% 감소하였다는 의견임.
-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학교폭력 통계를 살펴보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수는 2020년 572명에서 2024년 2,123명으로 271%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SPO 제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업무 범위 정립 및 전문성 강화

□ SPO는 학교폭력 예방 및 신고·사건처리 지원을 비롯하여,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사후관리,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보호종료 아동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보호 등 위기 청소년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⁵³⁾ 제도에 따라 사안조사 자문 및 사례회의 참여 등의 역할도 추가되는 등 업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청소년 범죄 양상이 교내를 넘어 사이버도박, 마약,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와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SPO에 대한 역할 기대도 다양해지고 있음. 최근에는 인력 증원을 전제로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순찰 역할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생활지도를 수행하게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확장된 업무 범위에 대해 SPO가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⁵⁴⁾, SPO가 학교폭력 문제와

5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조사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도입되었음. 전담조사관은 주로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관련 학생, 교사,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각종 자료(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상담 내용 등)를 바탕으로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

54) 김광수, “학교폭력 문제의 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사 간의 역할경계와 관계정립”,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pp. 499-507, 2017.

직접적 관련성이 불분명한 학생에 대한 상담·생활지도까지 요청 받는 경우가 증가하여 상담 대상이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발생 하는바⁵⁵⁾, 인력 부족과 함께 비전문성, 잦은 인사이동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언급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SPO 역할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 및 소년범 예방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협의를 통해 적정 업무 범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⁶⁾

또한, 사이버도박·마약·딥페이크 등 신종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능력 및 예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 확대 및 학생들과의 장기적 소통 및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SPO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인사·보상 체계의 설계 등 SPO 제도 자체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5)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인식과 직무만족도를 통한 SPO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2.12.16., 이 수정), 250p.; 관련보도: 「SPO 늘린다지만...학폭사건 업무과중 우려 "동네북인가"」(’24.7.11., 헤럴드경제), 「학폭은 증가하는데...학교전담 경찰관 업무 과중 우려」(’23.4.12., 대전일보)

56) 최근 교통법정책학회(사단법인)가 실시한 「미래형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방안 연구(’25.2.18.)」에서는 경찰이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만 개입하는 등 경중에 따른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함.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22.6.25. 경기대)」에서도 더 이상의 업무 확장보다는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여 업무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함.

2.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 공단은 면허관리 사업 중 적성검사 발급 및 판정수요를 적절히 예측하여 과소 추계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입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안내문자 발송 확대, 조기갱신 할인 등 수요 증가 요인을 사전에 반영하고, 과거 실적을 토대로 현실적인 수검률을 적용하는 등 수입예산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은 제1종 대형 면허시험용 차량 구매 시 사업추진과 법령개정 일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요 자산의 중장기 교체 계획 수립 시 관련 제도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1)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결산

-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출연금 사업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방송·운전면허시험관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450억 500만원이 전액 출연(집행률 100.0%)되었음.

<2024년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 산 액
	예 산 액		전 년 도 이월액(B)	이·전용 등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145,005	145,005	-	-	145,005	145,005	-	-	139,709

※ 자료: 경찰청

□ 공단의 2024년도 수입·지출예산액은 4,111억 9,975만원이었으나, 수입결산액은 4,111억 6,075만원으로 예산 대비 3,900만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결산액은 3,884억 2,258만원으로 227억 7,717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총 227억 3,816만원의 잉여금⁵⁷⁾이 발생함.

<2024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결산				2025년 예산
			예산현액	실 적	증감	결산 잉여금	
수 입	352,756	372,248	411,200	411,161	△39	22,738	432,628
지 출	350,493	369,747		388,423	22,777		

※ 전년도 수입대비 38,913백만원(10.45%), 지출대비 18,676백만원(5.05%) 증가

<2024년도 사업별 예산 및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4년 결산	비고
[수 입]	411,200	411,161	
① 사업수입	255,192	254,967	
▪ 안전사업	114,244 (14본·지부×8,160.3백만원)	116,234 (14본·지부×8,302.4백만원)	
▪ 교육사업	14,420 (14본·지부×1,030백만원)	12,957 (14본·지부×925.5백만원)	
▪ 방송사업	5,200 (13본·지방방송국×400.0백만원)	4,820 (13본·지방방송국×370.8백만원)	

57) 잉여금은 기획재정부 협의에 따라 ①차기이월 수입(30억 7,200만원) 및 ②차차기이월 수입(162억 9,716만원)으로 처리하고 ③퇴직급여 충당금(33억 6,900만원)으로 적립하였음.

구 분	2024년 예산	2024년 결산	비고
■ 면허사업	113,579 (27시험장×4,206.6백만원)	116,111 (27시험장×4,300.4백만원)	
■ 연구사업	7,588 (5부서×1,517.6백만원)	4,632 (5부서×926.4백만원)	
■ 임대사업	161 (3조직×53.7백만원)	213 (3조직×71.0백만원)	
② 사업외수입	992	1,752	
■ 이자수입	295 (1식×295.0백만원)	857 (1식×857.0백만원)	
■ 잡수입 등	697 (2식×348.5백만원)	895 (2식×447.5백만원)	
③ 기타수입	10,011	9,437	
■ 전년도이월금 등	10,011 (3식×3,337.0백만원)	9,437 (3식×3,145.7백만원)	
④ 도로교통공단출연금	145,005	145,005	
[지 출]	411,200	388,423	
① 도로교통사업	200,593	188,119	
■ 안전사업	48,245 (14본·지부×3,446.1백만원)	44,713 (14본·지부×3,193.8백만원)	
■ 교육사업	8,434 (14본·지부×602.4백만원)	7,265 (14본·지부×518.9백만원)	
■ 방송사업	28,028 (13본·지방방송국×2,156백만원)	27,738 (13본·지방방송국×2,133.7백만원)	
■ 면허사업	70,330 (28본·시험장×2,511.8백만원)	68,787 (28본·시험장×2,456.7백만원)	
■ 연구사업	8,842 (5부서×1,768.4백만원)	5,511 (5부서×1,102.2백만원)	
■ 경영관리	36,714 (52조직×706.0백만원)	34,105 (52조직×655.9백만원)	
② 기본사업경비	205,889	200,288	
■ 인건비	201,478 (3,036명×66.4백만원)	196,528 (2,922명×67.3백만원)	
■ 경상경비	4,411 (52조직×84.8백만원)	3,760 (52조직×72.3백만원)	
③ 예비비	4,718 (3,021명×1.6백만원)	16 (1명×16백만원)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나.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 면허 적성검사 수입 과소 추계

- 공단 사업 중 ‘면허관리’ 사업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등 면허발급 수수료, 적성검사 판정수수료 등을 징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4년 예산현액 815억 5,800만원 중 885억 9,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024년도 면허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추경(A)							
면허관리	81,558	-	-	81,558	88,599	88,599	-	-	98,683
면허발급 ¹⁾	66,354	-	-	66,354	71,708	71,708	-	-	78,940
적성검사	28,943	-	-	28,943	32,008	32,008	-	-	38,387
적성검사(판정) ²⁾	15,204	-	-	15,204	16,721	16,721	-	-	19,743

주: 1) 신규 면허발급, 적성검사, 면허 갱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발급 수수료

2) 운전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판정 및 행정처리 일체에 대한 수수료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이중 적성검사 발급수수료는 대상자 305만 명 중 82.4%의 수검률을 적용해 약 289억 4,300만원의 수입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검률은 89.7%로 나타나 실적은 320억 800만원에 달하며, 약 30억 6,500만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함.

- 정기 적성검사 판정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수검률⁵⁸⁾(2022년

58) 편성 당시 전년도 적성검사 수검률(2022년 수검률 82.4%를 토대로 2024년 목표율 산정)

82.4%)을 기준으로 2024년 목표 수검률을 산정해 약 152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검률이 이를 상회하면서 167억 2,1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해 15억 1,700만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함.

<2024년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 적성검사(발급)	28,943	- 일반면허증 214만명×10,000원×82.4% = 176억 - IC면허증(모바일면허증) 91만명×15,000원×82.4% = 113억
- 적성검사(판정)	15,204	- 정기적성검사판정 305만명×6,000원×82.4% = 151억 - 수시적성검사판정 9,833명×10,000원 = 1억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공단은 적성검사 수수료 실적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① 적성검사(갱신) 안내문자 발송 연계방식을 확대 ② 연말 면허 적성검사(갱신) 혼잡 완화를 위한 ‘조기갱신 수수료 할인’(1~2월 발급수수료 10% 할인) ③ 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실적증가 요인들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측 가능했던 사항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요소들로 판단됨. 특히 적성검사 안내문자 발송 확대나 조기갱신 수수료 할인과 같은 정책은 사전에 계획된 사업으로서, 이러한 요인들이 수검률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다면 보다 정확한 수입예산 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⁵⁹⁾

□ 참고로 공단은 2023년에도 적성검사 수입 추계가 실제와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2023년에는 대상자 219만명 중 100.0% 수검률을 적용해 약 379억 4,100만원의 수입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검률은 87.9%로 나타나 실적은 318억 8,800만원에 그쳤으며, 60억 5,300만원의 수입결손을 보였음. 이는 2023년에는 수검률 확대 추계했다가 2024년에는 과소 추계하는 등 연도별로 수검률 예측의 일관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줌.

<'23~'24년 적성검사 수수료 수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A)	실적(B)	증감액(B-A)	예산액(A)	실적(B)	증감액(B-A)
적성검사 수수료 (발급 + 판정)	37,941	31,888	△6,053	44,147	48,729	4,582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공단은 교통안전이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지차 보전 방식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적성검사 수수료 등 자체수입의 부정확한 추계는 불필요한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공단은 과거 실적과 수검률 증진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59) 2024년도 적성검사 수검률 82.4%는 22년도 수검률을 반영해서 한 것이기는 하나, 24년도 제도 개선 방안마련과 23년도 수검률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했을 것임.

다. 운전면허시험장 시험용차량 구매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운전면허시험관리 사업은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하여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고, 면허제도 운영 및 학과·장내·도로주행 시험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2024년 예산은 70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687억 8,700만원(97.8%)이 집행되었음.

<2024년도 운전면허사업관리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운전면허시험관리		70,330	-	-	-	-	70,330	68,787	-	1,543	70,419
	시험관리	42,579	-	-	-	-	42,579	41,281	-	1,298	42,637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내역사업인 ‘시험관리’ 사업에서는 412억 8,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억 9,80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차량운반구⁶⁰⁾ 관련 불용액이 7억 5,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60) 차량운반구는 1종 대형, 1·2종 보통 등 운전면허시험(장내기능, 도로주행)에 사용되는 차량임.

<2024년도 시험관리 사업 중 차량운반구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시험관리		42,579	-	-	-	-	42,579	41,281	-	1,298	42,637
차량운반구		4,450	-	-	-	-	4,450	3,697	-	753	3,244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불용 사유에 대해 공단은, 시험장 규격에 부합하는 기존 대형버스가 단종됨에 따라 대체 차종으로 화물차를 시험용 차량에 포함시키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⁶¹⁾ 개정(2025.3.20.)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화물차 실차테스트 및 시판 차량 납기 일정 등 제반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예산이 전액 불용 되었다고 설명함.

6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2025.3.20.개정·시행)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 94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 240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 798센티미터 이상

<노후차량 교체대상 및 집행계획 내역>

운전면허 시험장	용도	교체대상		계획안		실제구매	
		제조사 (모델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대수
부산 남부	1종대형 기능 시험용 차량(장애인)	대우 (BS-106)	1	현대 (파비스)	1	-	
전북	1종대형 기능 시험용 차량	대우 (BS-106)	1	현대 (파비스)	1	-	
원주	1종대형 기능 시험용 차량	대우 (BS-106)	1	현대 (파비스)	1	-	
예산	1종대형 기능 시험용 차량	대우 (BS-106)	1	현대 (파비스)	1	-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 실제로 남부, 전북, 원주, 예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노후 차량인 대우 BS-106을 현대 파비스(화물차)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의 차량 기준 적합 여부,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보완대책 수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차량 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량에 부착 예정이던 전자채점기 구입 예산(2,000만 원) 역시 전액 불용 되었음.
- ☐ 그러나 대형 차량 노후화 문제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차량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 공단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 일정과 법령

개정 일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요 자산의 중장기 교체 계획 수립 시 관련 제도적 요건과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경비국]

1. 기동대 운영 및 관리(2131-314)

- 법원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의 토지를 경찰청이 SH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년 연간 34억 4,069만원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경찰청은 2024년 12월 31일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2025년 예산에서는 임차료 항목으로 34억 4,069만원을 편성했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 건물이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토지 점유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점유할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기동대 운영 및 관리’ 사업은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및 의경폐지에 따른 경력 부족을 보완하는 안전장비 등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741억 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억 2,000만원 및 이·전용액 150억 4,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6억 7,600만원임. 이 중 집행액은 888억 9,800만원(집행률: 99.2%), 불용액은 7억 7,800만원(불용률: 0.8%)임.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동대 운영 및 관리	74,108	74,108	520	15,048	-	89,676	88,898	-	778	75,514

※ 자료: 경찰청

나.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 부지점유 권원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지속 협의 필요

□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5월 1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대한민국 (소관: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함.

○ 판결의 결론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제3기동단 청사가 2020년 8월 4일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토지를 점유할 근거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경찰청이 2020년 8월 4일 이후부터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의 연간 34억 4,069만원(2020년에는 연간 31억 3,660만원)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⁶²⁾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임.

62) 법원이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건물이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성격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보임.

<제2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874 사건)의 청구와 판결>

동 사건의 원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제2심 진행과정에서 주위적 청구를 변경함. 변경된 주위적 청구는 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이 2009년 8월 31일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하고, ②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했고, ③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협약 체결일에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09년 8월 31일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월 14일 선고한 2020나2020874 판결에서 이 사건 협약이 2020년 8월 3일 이후 해지되었다고 판단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협약이 2020년 8월 3일 해지되어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은 없지만, 제3기동단 건물의 신축경위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협약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인 이익에 반하고 그 손실이 막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제2심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10월 10일자 공문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2014년 10월 11일부터 토지사용료 상당액으로서 16,473,161,457원을 및 2021년 1월 1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3,440,6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 판결(2022다215302), 파기환송심 판결(2024나2008940)>

대법원은 2014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8월 3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파기했고, 2020년 8월 4일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동 관결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게 150억 4,825만원을 납부해야 함.

<2024년 연말 기준 경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연도	기간	연간 지불 금액	납부 금액
2020년	150일(2020년 8월 4일~12월 31일)	3,136,596,000원	1,285,490,164원 = 3,136,596,000원×150일÷366일
2021년	1년	3,440,688,000원	3,440,688,000원
2022년	1년	3,440,688,000원	3,440,688,000원
2023년	1년	3,440,688,000원	3,440,688,000원
2024년	1년	3,440,688,000원	3,440,688,000원
합계			15,048,242,164원

- 2024년 예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게 납부할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0년 8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토지 사용료 상당액 150억 4,825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2024년 12월 30일 예산 17억 6,400만원을 전용했고, 132억 8,400만원을 이용하여 배상금 310-02 목의 예산 150억 4,825만원을 마련했으며, 2024년 12월 31일 해당 금액을 지급함.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2.30.)	경비경찰활동 (2131-311)	250-03	1,764	기동대운영및관리 (2131-314)	310-02	서울경찰청은 SH 에게 그간 부지 사용료 150억 4,825만원을 지급 하라는 대법원 판 결에 따라 사용 배상금 확보
이용 (2024.12.30.)	교통사고예방 (1331-313)	210-02	1,400			
	헬기운용및현대화 (4232-311)	210-02	2,000			
	본부인건비 (7101-112)	110-01	9,884			

자료: 경찰청

- 참고로, 법원 판결문에 기초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경과 및 판결 선고 이후 조치를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는 2007년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418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는 2007년 6월 문정동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을 승인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함.
 -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009년 8월 협약을 체결하여, 제3기동단 청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유의 토지인

문정동 654로 이전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함.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문정동 654 부지에 제3기동단 청사를 신축하여 2011년 11월 29일에 사용 승인을 받음.

-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경찰청(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매매대금 및 사용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제1심 판결은 2020년 6월 4일 선고되었고, 제2심 판결은 2022년 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제3심인 대법원에서 2024년 2월 8일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은 2024년 5월 16일 선고되었고, 이후 파기환송심이 확정되었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4년 8월 9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배상금을 은행계좌로 조속히 납부할 것을 요청했고, 경찰청은 2024년 12월 31일 배상금을 납부한 것임.
- 경찰청은 2025년분 토지사용료 상당액 예산을 임차료(210-07목)으로 34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납부일자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중임.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 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의 진행 경과>

시 기	내 용
2007년 이전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418외 2필지에 위치
2007년 6월	서울특별시장은 문정도시개발사업 승인
2009년 8월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협약 체결
2011년 11월 2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유의 부지인 문정동 654 등에 신축한 제3기동단 청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
2011년~2017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요청했지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응하지 않음
2018년 12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법원에 소 제기
2020년 6월	제1심 판결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년 6월 4일 선고 2018가합114639 판결
2022년 1월	제2심 판결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년 1월 14일 선고 2020나2020874 판결
2024년 2월	제3심 판결 선고(파기환송) 대법원 2024년 2월 8일 선고 2022다215302 판결
2024년 5월	파기환송심 선고 및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4년 5월 16일 선고 2024나2008940
2024년 12월	경찰청은 예산 이·전용을 통해 310-02 배상금 비목 150억 4,825만 원을 마련하고, 배상금을 지급함
2025년	2025년 예산안에는 210-07 임차료 비목으로 34억 4,100만 원을 편성

□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145개가 있고, 이 중 일부는 청사를 통합 사용하여 92개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중 87개소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4개소[서울 8기동단 86기동대·87기동대, 경기남부 9기동대(수원), 강원 3기동대(양양), 경남 2기동대]는 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 건물이 유일함.

<경찰청 소속 기동대의 토지 점유 현황>

전체 기동대 및 청사 수	국유 토지 점유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토지의 무상 사용	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지방공기업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92개소	87개소	4개소	1개소
145개 기동대		○ 서울특별시경찰청 제8기동단 86 기동대, 87기동대 ○ 경기남부 9기동대(수원) ○ 강원 3기동대(양양) ○ 경남 2기동대	○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자료: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경찰청은 2024년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의 건물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법원에서 최종확정되었다는 점 등⁶³⁾을 감안하면 점유할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63)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 건물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의 연간 34억 4,069억원의 비율로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 상당 금액의 법적 성격은 판결 이유 등을 고려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지속 협의하여 토지 점유에 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당하게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수사국]

1.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2)

- 사기범죄 발생과 피해액은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수사인력 부족, 높은 이탈률, 지역별 수사역량 격차,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수사인력의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지역별 수사역량 균형 확보, 체계적 인력 운영 등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연간 24만건의 신고를 처리하는 상담팀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접수된 신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 요청 등을 실시하지만 실제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졌는지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해당 처리결과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 사업을 통해 구축된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구축을 계획하는 플랫폼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은 선거사범 단속, 전화금융사기 대응 장비 확충, 보이스피싱 홍보·공조 강화를 통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성을 높이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93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92.2%인 86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900만 원(3.5%)은 이월, 4억 100만 원(4.3%)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능·경제 범죄수사 역량강화	9,364	9,364	-	±286	-	9,364	8,634	329	401	6,903

※ 자료: 경찰청

나.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수사인력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사기범죄는 전체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유형으로, 그 비중은 2019년 18.9%에서 2024년 26.6%로 증가함. 반면, 검거율은 2019년 73.9%에서 2023년 57.0%까지 하락했고, 2024년 60.4%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2019년 대비 13.5%p 낮은 수준임.

<사기범죄 발생·검거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	전체범죄	1,611,906	1,587,866	1,429,826	1,482,433	1,520,200	1,583,936
	사기범죄	304,472	347,675	294,075	325,848	347,901	421,936
	비중	18.9	21.9	20.6	22.0	22.9	26.6
검거	전체범죄	1,342,854	1,289,129	1,136,665	1,133,788	1,185,985	1,223,277
	사기범죄	225,121	237,407	180,418	191,900	198,167	254,702
	비중	16.8	18.4	15.9	16.9	16.7	20.8
검거율	전체범죄	83.3	81.2	79.5	76.5	78.0	77.2
	사기범죄	73.9	68.3	61.4	58.9	57.0	60.4
	비중	88.7	84.1	77.2	77.0	73.1	78.2
사기범죄 피해액		24,211,400	40,348,000	15,084,400	29,248,700	18,513,700	28,135,300

※ 자료: 경찰청('24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로 추후 공표되는 국가승인 통계와 그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사기범죄 피해액⁶⁴⁾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9년 24조 2,114억원에서 2024년 28조 1,353억원으로 16.2% 증가함. 특히 2020년에는

64) 사기범죄 피해액 통계는 불송치 건수를 포함한 모든 접수 사건에 대한 피해액의 총합임.

40조 3,48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도 29조 2,487억원의 높은 피해액을 기록하는 등, 대규모 투자사기·부동산 사기 등 고액 피해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

□ 경찰청은 검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사이버사기·투자리딩방 사기·연애빙자사기 등 금융·통신 발달에 따라 조직화·비대면화·초국경화된 신종사기가 증가하면서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함.⁶⁵⁾

□ 그러나 경찰청이 주장하는 신종사기 증가만으로는 검거율 하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수사현장과 언론 보도 등에서는 수사인력 부족, 인력 이탈, 지역 간 수사역량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수사과 소속 경찰관 비율은 2021년 33.3%에서 2023년 36.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35.5%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경찰서 수사부서의 인력 이탈률⁶⁶⁾은 2021년 상반기 9.3%, 2022년 상반기 12.0%, 2023년 상반기 9.0%, 2024년

65) 경찰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대 악성사기(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사이버사기 ⑤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미끼문자 등 스미싱)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피의자 검거활동, 사기범죄 사전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2024년 검거율이 소폭 반등한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함.

66) 이탈률은 전체 수사현원 중 비수사부서로 진출된 인원의 비율(전입은 고려대상 아님)을 의미하며, 수사 직무에서의 실질적 인력 이탈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이는 진출률과 구분되는데, 진출률은 전체 수사현원 대비 수사·비수사를 포함한 타 부서로 이동한 인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반면, 이탈률은 그중에서도 수사 기능을 완전히 벗어난 비수사부서로의 진출만을 반영함. 예를 들어 통합수사팀 소속 10명 중 2명이 진출되어 1명이 지구대(비수사부서), 1명이 형사팀(타 수사부서)으로 이동했다면, 진출률은 20%지만 이탈률은 10%로 산출됨.

상반기 10.2%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5년간 수사과 소속 경찰관 비율 통계>

(단위: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수사과 소속 경찰관 비율 (수사기능 현원/ 수사경찰 현원)	33.3%	35.7%	36.9%	35.5%

※ 자료: 경찰청

<경찰서 수사부서 인사이동 규모>

(단위: %)

구 분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이탈률 (非수사부서로 전출)	9.3%	12.0%	9.0%	10.2%
전년 대비 증감	-	2.7%p ↑	3.0%p ↓	1.2%p ↑

※ 자료: 경찰청

□ 또한, 수사경과 취득 및 반납·해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004명이 수사경과를 취득한 반면, 같은 기간 9,562명이 반납하거나 해제하여 약 56.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2021년 3,664명, 2022년 2,525명이 수사경과를 반납 또는 해제하는 등 수사 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수사 경과 반납·해제자는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고도화된 수사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20~2024년 수사경과 취득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 계	5,020	2,891	2,848	3,174	3,071

※ 자료: 경찰청

<2020~2024년 수사경과 반납·해제자⁶⁷⁾ 현황>

(단위: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반 납(희망)	821	3,096	2,014	654	616
해 제(직권)	403	568	511	314	565
총 계	1,224	3,664	2,525	968	1,181

※ 자료: 경찰청

□ 일례로, 서울청의 경우 '23. 11월 고소·고발 전건접수 시행 이후 일선 경찰관서 수사부서 1인당 사건 건수는 2022년 96.3건, 2023년 99.2건, 2024년 120.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1인당 처리기간은 2022년 70.1일, 2023년 68.4일, 2024년 62.8일로 감소하고 있어 수사관들의 업무 과중 및 수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서울청 일선경찰관서 수사부서 1인당 사건건수 및 처리기간>

구 분	'22년	'23년	'24년
1인당 사건건수	96.3건	99.2건	120.6건
1인당 처리기간	70.1일	68.4일	62.8일

※ 자료: 경찰청

67) 비수사 부서로 가는 경찰관 수

□ 한편, 지역별 사기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전국 사기범죄 발생 건수의 19.3%인 81,377건에 비해 검거율은 51.9%로 전국 평균 60.4%에 미치지 못하며,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3,613건이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55.4%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광주(67.1%), 울산(71.6%), 대구(70.2%) 등은 비교적 높은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2019~2024년 주요 지역별 사기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발생	304,472	347,675	294,075	325,848	347,901	421,993
	검거	225,121	237,407	180,418	191,900	198,167	254,702
	검거율	73.9	68.3	61.4	58.9	57.0	60.4
서울	발생	59,355	65,739	51,661	57,910	62,616	81,377
	검거	37,792	39,361	28,534	30,104	32,527	42,206
	검거율	63.7	59.9	55.2	52.0	51.9	51.9
부산	발생	26,598	32,466	26,079	27,535	28,485	30,482
	검거	20,466	25,421	16,841	17,425	17,033	20,178
	검거율	76.9	78.3	64.6	63.3	59.8	66.2
대구	발생	14,899	16,879	15,146	15,103	15,767	18,219
	검거	11,227	12,717	10,086	10,902	9,702	12,784
	검거율	75.4	75.3	66.6	72.2	61.5	70.2
인천	발생	16,491	19,521	15,194	17,777	20,405	23,893
	검거	12,483	13,184	9,000	9,652	11,583	15,848
	검거율	75.7	67.5	59.2	54.3	56.8	66.3
광주	발생	7,760	8,896	7,406	8,590	9,790	12,777
	검거	6,930	6,975	5,655	5,438	5,997	8,574
	검거율	89.3	78.4	76.4	63.3	61.3	67.1
대전	발생	9,227	10,481	9,224	12,086	12,018	14,097
	검거	7,019	7,690	5,889	7,393	6,228	9,096
	검거율	76.1	73.4	63.8	61.2	51.8	64.5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울산	발생	6,711	7,770	6,364	5,884	7,854	7,823
	검거	4,675	5,448	4,156	3,432	4,638	5,603
	검거율	69.7	70.1	65.3	58.3	59.1	71.6
세종	발생	1,357	1,537	1,118	1,575	1,933	2,754
	검거	728	672	529	594	901	1,427
	검거율	53.6	43.7	47.3	37.7	46.6	51.8
경기남부	발생	55,789	65,648	55,867	58,302	64,675	83,613
	검거	41,093	42,597	31,371	31,837	34,978	46,328
	검거율	73.7	64.9	56.2	54.6	54.1	55.4

※ 자료: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러한 지역별 검거율 차이는 사기범죄 발생 건수와 수사인력 불균형, 수사역량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기범죄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인력 배치와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경찰청은 2023년 7월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통합수사팀의 유사 사건 병합 수사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마음동행센터 확충 및 상담관 증원 등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나, 2024년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는 6월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인력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 대책 4개⁶⁸⁾ 중 3개가 이행되지 않아 업무 과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⁶⁹⁾

68) ①시·도경찰청 간 인력 재배치, ②시·도경찰청별 관서 간 수사 인력 조정, ③지역 관서별 적정 인력 산출을 통한 정원 재배치, ④ 예비 수사경과자 인사운영 개편

69) 아시아경제 「[단독] ‘업무 과중’ 경찰관 사망에도…1인당 담당 사건 수 증가」(2025.3.17.)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제출한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 자료에서 2024년 6월 평균 28.5건이던 것이 같은 해 12월에는 29.4건으로 늘었으며, 서울의 경우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당초 2024년 내 완료 예정이었던 4개 대응 방안 중 △시·도경찰청 간 인력 재배치, △시·도경찰청별 관서 간 수사 인력 조정, △지역 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한 정원 재배치 등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기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은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사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탈률, 지역별 수사역량 격차,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특히 사기범죄가 집중되는 대도시 지역의 검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서, 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경찰청은 단기적인 대응책을 넘어 수사인력의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지역별 수사역량 불균형 해소, 업무 과중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운영 방안 등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정원 확보 및 보이스피싱 관련 부처·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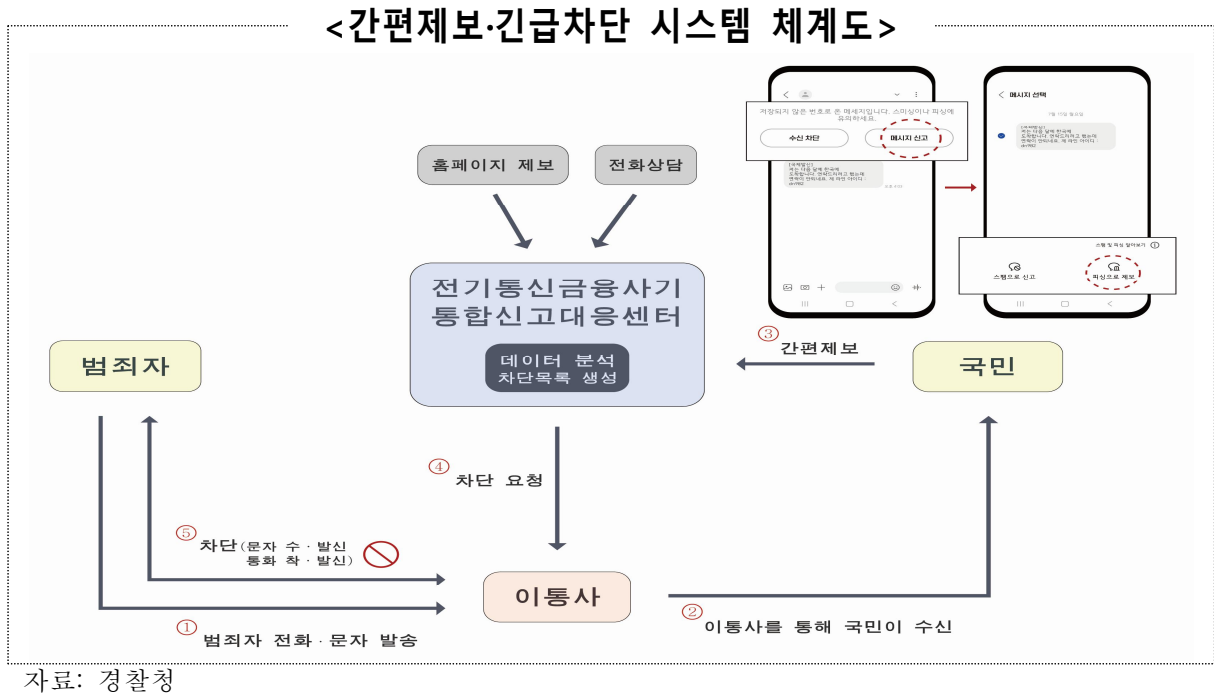
- 세부사업인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2023년 10월 개소)의 2024년 예산은 48억 5,200만원으로, 전화 상담시스템, 간편제보시스템, 긴급차단시스템 등을 위해 44억 3,100만원이 집행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업의 2024년 집행내역>

구 분	예 산	집행액 및 주요 집행내역
전화 상담시스템 구축	6억 6,700만원	○ 집행액: 5억 7,700만원 · 기 구축*된 전화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챗봇도입, 자막생성(STT) 기능, 문자 수신·일괄 발송 기능, 인터페이스 개선 등 * 2023년 예산을 통해 음성 전화 상담 콜센터 환경 구축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간편제보시스템, 긴급차단시스템) 구축	39억 300만원	○ 집행액: 35억 7,400만원 · 간편제보시스템(삼성전자 휴대전화) * 사업기간: 2024. 6. 28. ~ 2025. 2. 23. * 2024년 12월 앱 업데이트 진행. '피싱으로 신고' 버튼으로 피싱번호 신고 가능 · 통합신고 홈페이지 * 사업기간: 2024. 6. 28. ~ 2025. 2. 23. *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범 운영 · 긴급차단시스템(통신사) * 사업기간: 2024. 6. 28. ~ 2025. 2. 23. * 2025년 8월~9월경 운영 개시 목표
센터 운영 유지비	1억 9,400만원	○ 집행액: 1억 9,200만원(33명×580만원)
센터 물리적 구성비	8,800만원	○ 집행액: 8,800만원(33명×260만원) · 2023년 예산으로 구입한 14명분 집기류(책상 등) 외 인원을 위한 집기류 구입
합계	48억 5,200만원	○ 44억 3,100만원

자료: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사업을 통해 구축을 추진하는 통합대응시스템은 국민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임.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차단 요청 외에도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음.⁷⁰⁾

7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처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024년 연간 243,462건의 신고⁷¹⁾에 대해 안내⁷²⁾를 실시함. 2024년 상담을 실시한 상담팀의 현원은 16명~23명으로 5월을 제외하고는 결원이 2명~7명이 발생하고 있음.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개개인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므로, 정원을 충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접수번호 별 신고 접수 건수>

번호	112	118 (KISA)	182 경찰청 민원 콜센터	1332 금융감독 원	대표번호	기타 (콜백)	합계
신고 건수	104,641	34,350	18,816	27,876	21,742	36,037	243,462

자료: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 현황>

구 분	1월	2월	5월	6월	10월	12월
운영팀	정원: 7	정원: 7	정원: 7	정원: 7	정원: 8	정원: 9
	현원: 4	현원: 4	현원: 5	현원: 5	현원: 4	현원: 4
	파견: 1	파견: 1	파견: 1	파견: 1	파견: 1	파견: 1
상담팀	정원: 23	정원: 23	정원: 23	정원: 23	정원: 23	정원: 27
	현원: 14	현원: 11	현원: 18	현원: 16	현원: 16	현원: 16
	파견: 5	파견: 5	파견: 5	파견: 5	파견: 5	파견: 5

* 금융·통신자문관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에 반영

자료: 경찰청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로의 정보 전파
 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1) 피해자는 112, 118(한국인터넷진흥원), 182(경찰청민원콜센터), 1332(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대표번호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음.
- 72) 동 센터는 상담과 관련해서 112로 접수된 신고 중 금전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악성앱 설치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연결하여 센터에서 전화를 연결받아 상담을 처리하고 있음. 환급 관련 상담이 접수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안내를 하고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면, 상담팀의 상담원은 임기제 행정관 8급, 9급으로 구성되는데,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보직의 특성상 평생 직장으로 인식되지 않아 임기 중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결원시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근무하므로 신규채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는 임기제 공무원 선발인원을 직제상 정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다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신고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 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정지·이용정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범죄 신고 접수를 처리하는 112의 경우⁷³⁾ 신고 처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신고 및 계좌지급 요청 등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경찰청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통신사와 전산망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금융회사 및 통신사로부터 지급정지 및 이용중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회신이 없는 등으로 실제 지급정지·이용정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

7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12신고의 기록·보존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처리 상황을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에 입력·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고, 범죄의 재발 방지 및 국민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는 신고 처리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2024년 사업을 통해 이동통신사와 연계하는 간편제보 및 긴급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2025년 8월 또는 9월 경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인데, 동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수립 중인데,⁷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통합분석 대응시스템이 금융위원회에서 구축을 계획하는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4) 뉴시스 2025년 7월 28일 기사, “금융위,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연내 구축 ...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수사인권담당관실]

1.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1231-317)

○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 시설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 실시율이 2021년 7.0%에서 2024년 4.6%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절차 간소화, 수사관 교육 강화,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영상녹화제도 활용률을 제고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 사업은 유치장 내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사고방지 등 처우 개선, 영상녹화·진술녹음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지원을 통해 심리적·신체적 안정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104억 5,600만원이며, 이·전용 3억 1,300만원을 통해 총 예산현액은 107억 6,900만원으로, 이 중 99.2%인 106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천만원(불용률 0.8%)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사인권 및 피해자 보호활동	10,456	10,456	-	313	-	10,769	10,679	-	90	10,002

※ 자료: 경찰청

나.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실시율 저조

-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제도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정한 수사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임.⁷⁵⁾

〈 진술영상녹화 사업 개요 〉

- ▶ **(개요 및 도입배경)** 진술영상녹화 제도는 경찰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 인권 보호 제고를 목적으로 2006년 최초 도입, 현재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운영
- ▶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21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43조⁷⁶⁾
- ▶ **(영상녹화대상)**
 -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체포·구속된 피의자 ▲살인·성폭력·증수뢰·선거범죄·강도·마약·피해금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 피의자 ▲영상녹화를 요청한 피의자 신문은 녹화할 수 있다.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구속된 피의자 ▲문맹인·시각장애인 ▲외국인·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경과)** △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마련(07년)⁷⁷⁾ △ 경찰청 중앙서버 저장관리(23년)
- ▶ **(향후 계획)**
 - '25년 수사서류 완전전자화가 시행됨에 따라 영상녹화서버를 차세대KICS 서버로 통합
 - 수사관의 영상녹화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연 2회 운영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

75) 치안정책연구소,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경찰 영상녹화제의 재조명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1.

76)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 2024년 진술영상 녹화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은 총 6억 3,900만원
으로, 신규 장비 108대 설치와 기존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되었음.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77)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영상녹화의 대상)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및 제22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진술 및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해야 한다. 또한,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1. 체포·구속된 피의자(다만,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으로 불구속 수사하거나, 즉시 석방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살인, 성폭력, 증수죄,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3.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희망한 경우
4. 피의자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5. 피의자가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

④ 경찰관은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피의자신문조서나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해야 한다.

1. 기계고장, 시설부족, 정전등의 사유로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경우
2. 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부득이 영상녹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영상녹화 피의자 조사가 심히 곤란한 경우

⑤ 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도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 및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경우와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제4호, 제5호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진술영상 녹화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예산 편성 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영상녹화장비 설치현황		103대	103대	111대	117대	108대
예 산	장비	465백만원	465백만원	515백만원	515백만원	515백만원
	유지 보수	120백만원	120백만원	124백만원	124백만원	124백만원

※ 자료: 경찰청

□ 진술영상녹화 시설은 2006년 404실에서 2024년에는 925실로 대폭 확대되었고, 2024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982대의 영상녹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 실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검거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실시율은 2021년 7.0%에서 2024년 4.6%로 하락하였으며, 영상녹화 건수도 같은 기간 79,170건에서 55,264건으로 30.2% 감소하였음.

<영상녹화 장비 보유 현황('24. 12 월 기준) >

(단위: 대)

경찰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6	187	45	42	79	29	43	24	14	110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8	43	30	40	44	56	68	52	12	982

※ 자료: 경찰청

<연도별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현황>

(단위: 건, %)

연도	검거건수	영상녹화	전년 대비 증감률	진술녹음	전년 대비 증감률	영상녹화 실시율
2021년	1,136,661	79,170	-	24,026		7.0%
2022년	1,133,788	78,103	-1.4%	35,547	48.0%	6.9%
2023년	1,186,123	60,926	-21.9%	63,597	78.9%	5.1%
2024년	1,192,516	55,264	-9.1%	93,804	47.5%	4.6%

※ 자료: 경찰청

□ 이러한 저조한 활용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됨.

□ 첫째, 현행 영상녹화 절차의 비효율성이 지적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영상녹화는 종료 후 CD에 저장하고 사건 송치 시 함께 송치해야 하는 번거로움⁷⁸⁾이 있어, 비교적 절차적으로 편리한 진술녹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실제로 진술녹음은 2021년 24,026건에서 2024년 93,804건으로 290.4% 증가했지만, 영상녹화는 2021년 79,170건에서 2024년 55,264건으로 30.1%로 감소하였음.⁷⁹⁾

78) 「경찰수사규칙」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하여 그 중 하나를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한 후,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4. 5. 24.>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79) 절차적 번거로움이 영상녹화 기피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바, 수사서류 완전 전자화와 연계하여 영상녹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통계>

(단위: 건)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영상녹화	79,170	78,103(1.4% ↓)	60,926(21.9% ↓)	55,264(9.1% ↓)
진술녹음	24,026	35,547(48.0% ↑)	63,597(78.9% ↑)	93,804(47.5% ↑)

※ 자료: 경찰청

- 더불어, 수사관들의 영상녹화 제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영상녹화제도가 수사기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운영되면서, 수사관들이 업무부담을 느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⁸⁰⁾

형사절차상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사기관·변호인·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가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필요성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으나, 동시에 피의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임의적 운영 하에서는 실질적인 인권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됨.

일례로, 202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주문에 따르면⁸¹⁾, 경찰관이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제도를 혼용⁸²⁾하며, 사건 관계인의 진

80) 탁희성 외 3명(2020.1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Ⅳ)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81) 2024년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제5소위원회 의결(제2024-5소위14-경01호)

술녹음 요청을 거부하고 고지·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 교육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경찰청은 연 2회 영상녹화 운영성과 분석자료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시도경찰청 자체 교육을 지시할 계획이라 하고 있으나, 영상녹화 실시율의 지속적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둘째, 시도청별 영상녹화 실시 비율이 대체로 2~7%대로 지역별로도 편차가 존재함.⁸²⁾ 경찰청은 영상녹화 미실시 사유별(예: 피의자 거부, 장비 미비, 사건 성격 등)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시·도청별 여건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찰청별 상황을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된 업무지침 마련이 요구됨.

82) 국민권익위원회 판결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9. 12. 26.부터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영상녹화 제도’와 ‘진술녹음 제도’를 혼동하며 이를 거부한 것은, 경찰관이 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함.

83) 안현주, 「광주경찰, 피의자 진술녹화 실적 ‘전국 꼴찌’」, 「무등일보」, 2022.09.28.

<'24년 전국 시·도청별 검거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실시 비율>

(단위: 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4.0	2.7	6.1	3.7	6.7	3.8	5.3	7.2	4.6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	6.8	2.4	5.4	3.8	6.4	5.2	5.2	5.3

※ 자료: 경찰청

- ☐ 경찰청은 수사의 투명성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영상녹화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균등한 실행과 높은 활용률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녹화 절차 간소화, 수사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그리고 시·도 경찰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추진하여 영상녹화 실적 제고가 필요함.

[중앙경찰학교]

1. 신임순경 교육(4133-311)

- 경찰청은 신임순경교육 사업 추진 시 태블릿 PC 등 자산성 물품과 통신서비스를 예산과목별 집행 원칙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고 일반용역비로 일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지출성격에 적합한 비목으로 각각 계상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 목적에 맞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향후 중앙경찰학교 등 소속 기관의 유류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단가와 과거 예산 비목별 집행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연말의 반복적 세목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신임순경교육 사업’은 전문 직업경찰관 육성을 위해 신임순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332억 2,900만원이며, 이 중 97.8%인 325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6,200만원을 이월하고 2억 5,600만원(0.8%)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신임순경 교육	30,443	30,443	2,506	280	-	33,229	32,511	462	256	30,373

※ 자료: 경찰청

나. 예산비목 구분없이 일반용역비로 처리하는 집행방식 부적정

- 신임순경교육 사업은 신임순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신임순경 교육운영’ 내역사업과 노후된 교육시설 유지·보수 등 환경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중앙학교 시설운영’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찰청은 2024년 신임순경 교육생에게 태블릿 PC를 활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관련 예산으로 태블릿 PC 임차료, 보안프로그램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총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24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목	내역	산출 근거	금액
210-07	태블릿pc 임차료	12월*19,000원*2,500대	570
210-09	태블릿pc 보안프로그램설치	100,000원*2,500대	250
	태블릿pc 유지보수 비용	1,100원*2,500대*2회	5
합계	—	—	825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당초 태블릿 PC 임차료(210-07)와 보안·유지보수 비용(210-09)으로 편성된 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로 내역조정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태블릿 PC

2,500대의 물품 취득과 무선통신서비스를 일반용역대금이라는 명목으로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보화 자산 성격의 물품을 일반용역비로 구매한 것에 해당함.

< 2024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사업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세 목	내 역	산출 근거	금 액
210-14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용역대금 (1) pc임차료 (2) 보안프로그램설치 (3) 폴리앱 개발 (4) 전용통신망 구성	무선통신서비스 총사업금액의 28% (3년간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납부)	825

※ 자료: 경찰청

□ 이처럼 경찰청은 태블릿PC 납품 및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태블릿PC 등 자산취득 성격의 비용과 통신요금 성격의 비용, 연구용역비 성격의 비용을 해당 비목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지 않고, 일반용역비(210-14목)로 일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회계 처리임.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일정 기간 반복 사용되는 기기나 장비 등 자산성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자산 등록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데이터통신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경찰청은 당초 임차료로 책정된 예산으로는 보안상의 문제로 WIFI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품, 데이터 제공, 앱 개발, 통신망 구성 등을 종합 수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이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방식은 자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향후 동일 물품의 중복 구매나 자산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음.

□ 일례로, 2022년 경찰청이 실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타 비목으로 자산 취득 후 물품 등재를 누락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으며, 2024년 울산경찰청 종합감사에서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사용부서 확인 및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별 물품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있음.

□ 예산과목별 집행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용역비로 다양한 비목의 지출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비목별 편성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과목별 집행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출 성격에 적합한 비목으로 각각 계상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에 맞는 정확한 회계 처리를 통해 자산관리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중앙경찰학교 유류비 과소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세목변경
지양 필요

- '신임순경 교육운영' 사업 중 유류비(210-08목)는 중앙경찰학교의 강의동 등 건물 냉·난방 및 온수를 위한 경비로, 2024년도 예산액 3억 6,0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유류비가 부족하여 2억 1,000만원을 세목변경하여 총 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중앙경찰학교는 신임순경 교육운영 사업의 유류비 집행과정에서 다른 비목에서 총 2억 1,000만원을 세목변경하여 집행을 한 문제가 있음. 세목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30일 급식비(210-04목)에서 2,900만원, 특근매식비(210-05목)에서 1,200만원, 일반용역비(210-14목)에서 700만원, 관리용역비(210-15목)에서 6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220-01목)에서 1억 5,500만원을 유류비(210-08목)로 세목변경하였음.

<신임순경 교육 중 유류비 관련 세목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아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24.12.30	신임순경교육	210-04	29	신임순경교육	210-08	유류비 부족
'24.12.30.	신임순경교육	210-05	12	신임순경교육	320-08	유류비 부족
'24.12.30.	신임순경교육	210-14	7	신임순경교육	210-08	유류비 부족
'24.12.30.	신임순경교육	210-15	6	신임순경교육	210-08	유류비 부족
'24.12.30.	신임순경교육	220-01	155	신임순경교육	210-08	유류비 부족

□ 또한, 유류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변경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류비 부족의 주요 원인은 매년 강의동 유류비를 모두 동일한 단가인 79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⁸⁴⁾

<최근 3년간 유류비 부족관련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 산	세목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2	504	807	1311	1310	1	99.9%
2023	360	425	785	785	-	100%
2024	360	210	570	568	2	99.6%

□ 변동 폭이 큰 유가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앙경찰학교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하는 유류비 기준단가⁸⁵⁾를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단가(790원)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관행은 전년도 실제 집행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84) <최근 5년간 강의동 유류비 편성 현황>

연도	세목	내역	산출 근거	금액
2020년	210-08	강의동 유류비	22785M ² *18.3L*790원	329,403천 원
2021년	210-08	강의동 유류비	22785M ² *18.3L*790원	329,403천 원
2022년	210-08	강의동 유류비	22785M ² *18.3L*790원	329,403천 원
2023년	210-08	강의동 유류비	22785M ² *18.3L*790원	329,403천 원
2024년	210-08	강의동 유류비	22785M ² *18.3L*790원	329,403천 원

85) 기획재정부 고시 연도별 유류비 기준단가

(단위: 원/ℓ)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류비	976.2	847.4	1004.3	1375.5	1,245.0

한 뒤, 연말에 부족분을 타 비목에서 세목변경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⁸⁶⁾

-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중앙경찰학교 등 소속 기관의 유류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단가와 과거 예산 비목별 집행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연말의 반복적 세목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86) 특히, 2024년도에는 국내여비(220-01목)에서 가장 큰 규모인 1억 5,500만원이 유류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세목 변경된 바 있으며, 이는 애초에 계획된 국내 출장활동이 축소되거나 미집행되었음을 시사함.

[경찰대학]

1. 경찰대학운영(4131-311)

- 경찰청은 경정교육과정 이관 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실제 필요액보다 과다하게 전용한 후 상당 부분을 타 용도로 세목조정하였는데, 향후 교육과정 변경 시 정확한 소요 예측에 기반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등 건설 사업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과 공정 관리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여야 함.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증축 사업은 2025년 8월까지 이월금 전액 집행과 2026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대학운영’ 사업은 대학생 과정, 석·박사의 치안대학원과정, 경위 공채자과정,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경력채용자 과정을 비롯한 경정, 총경의 경찰관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경찰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119억 1,400만원이고 전용액 2억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1억 3,900만원이며, 이 중 88.5%인 107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3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대학운영	11,914	11,914	-	225	-	12,139	10,739	1,394	6	14,592

※ 자료: 경찰청

나. 경정교육과정 이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경찰청은 경정역량강화과정⁸⁷⁾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 없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과정을 이관한 후 전용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2023년 8월, 경정이 경찰서 과장 등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교육과정인 ‘경정역량강화과정’을 실무중심의 교육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관리자 교육기관인 경찰대학으로 이관⁸⁸⁾하고, 2024년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였음.
- 예산편성 당시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경찰대학으로 이관되지 않았음. 경찰대학이 2024년 동 교육과정에 집행한 예산은 급식비(210-04)와 일반용역비(210-14) 등으로 1억 1,600만원이며, ‘경찰인재개발원’으로부터 2억 1,900만원을 전용(2024.12.17.)하였음.

<2023~2024년 경정교육 실시 및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실시기관	실시기간	예산액	집행액
2023	경찰인재개발원	4주(年 120명x2회)	68	57
2024	경찰대학	4주(年 65명x7회)	-	116

※ 자료: 경찰청

87) 연혁적으로 볼 때, 2019년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경정·경감 기본교육을 경찰대학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이관한 후에 2024년 관리자 교육기관인 경찰대학으로 재이관하였음.

88) 경정과정 이관은 23년 8월 결정함.

<2024년도 경정 역량과정 관련 예산전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4.12.17.)	경찰인재개발 (4132-311)	급식비 (210-04)	81	경찰대학운영 (4131-311)	급식비 (210-04)	경정 역량과정 이관에 따른 인재개발원 운영비 전용	
		일반용역비 (210-14)	138		일반용역비 (210-14)		
소계			219		219		
세목조정 (‘24.12.17.)	경찰대학운영 (4131-311)	급식비 (210-04)	73	경찰대학운영 (4131-311)	일반수용비 (210-01) 192	경정 역량과정 및 대학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총당	
		임차료 (210-07)	2				
		일반용역비 (210-14)	130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20		
		관리용역비 (210-15)	2				
		기타운영비 (210-16)	5				
소계			212		212		

※ 자료: 경찰청

□ 그러나 전용된 금액(2억 1,900만원)은 실제 경정역량강화과정 집행액(1억 1,600만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다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찰대학은 동일 날짜에 전용받은 급식비와 일반용역비 중 대부분을 다시 일반수용비 등 다른 비목으로 세목 조정하였음.

□ 이러한 경찰대학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경정역량강화과정 이관 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교육과정의 이관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별도 예산편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둘째, 필요한 금액(1억 1,600만원)보다 과다한 예산(2억 1,900만원)을 전용한 후, 필요 이상의 금액(일반수용비 1억 9,200만원)⁸⁹⁾을 세목 조정한 것은 경정역량강화과정 운영을 위한 전용이라는 당초 전용 취지와 맞지 않음.

실제, 경찰대학은 2024년 경정역량과정을 이관받았으나, 예산 미편성 관계로 경찰대학 내 교수요원을 활용하여 강사료 집행을 줄이고 일반수용비 예산을 절약 집행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고 설명함.

하지만 이러한 경찰대학의 설명은 전용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반증으로 경찰대학이 내부 교수요원 활용과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경정역량강화과정을 1억 1,60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면, 연말에 경찰인재개발원으로부터 2억 1,900만원을 전용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국가재정법」 제46조의 예산전용 취지 및 제45조의 예산

89) 경정역량강화과정에 소요된 강사료(일반수용비)는 약 6,000만원임.

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2024년 전 기간에 실시된 경정 교육비 예산을 연말(12월)에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하고 동일 날짜에 다시 세목 조정하여 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충당⁹⁰⁾을 위해 집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정역량강화과정 운영 외의 목적으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여짐.

<2024년도 경정역량강화과정 운영비 세부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		집행액
경정과정 교육운영비 (210-01)	강사료 (210-01)	59,381
	급식비 (210-04)	43,709
	급식위탁용역비 (210-14)	11,842
합계		115,652

□ 향후 경찰청은 교육과정 이관 시 해당 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하게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소요에 맞는 적정 규모로 전용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0) 경찰대학은 2023년 실시된 '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23년 운영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24년도 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의 12.3%에 해당하는 1,475백만원(일반수용비 288백만 원 포함)이 감액됨.

특히, 급식비 등의 세목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급식비를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⁹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91) 경찰대학은 2023년도에도 급식비 6,300만원을 행사·세미나 진행을 위한 대학운영 물품 구매(일반수용비, 210-01)) 및 노후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세목조정한 바 있음.

다. 경찰대학 연례적 건설비 과다 이월

- 경찰대학은 2024년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건설을 위한 예산 중 13억 9,400만원(예산현액의 13.7%)을 이월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설비가 과다 이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예산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찰대학 운영 사업 중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 건설비 총 18억 4,300만원 중 13억 9,400만원(13억 8,400만원의 공사비와 1,000만원의 감리비)이 이월되었음.

<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증축 공사 개요 >

- 가. 사업기간: '22~'26년('22~'24년 설계 및 총사업비 조정, '25~'26년 공사)
- 나. 총사업비: 77억 8,400만 원
- 다. 사업내용: 1개동(지상 4층) / 연면적 2,650㎡(802평)
- 라. 이월금액: 건축공사 공사비·감리비 13억 9,357만 원⁹²⁾ ⇨ '25. 3월 착공으로 8월 집행 완료 예정
- 마. 향후일정: '26년 5월 공사 준공 예정

※ 자료: 경찰청

- 이러한 예산 이월은 총사업비 증액 조정 협의 지연 및 설계 도서 수정, 조달청 입찰·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 소요로 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2023년을 제외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적으로 건설비가 과다 이월되는 경향이 있음.

92) '24년 배정 건설비 1843백만원 중 실시설계비 60백만원, 공사비 375백만원, 감리비 9백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등 449백만원 집행 후 남은 1394백만원 이월금 발생

<2021~2024년 경찰대학 공사비 이월 현황>

연도	이월액	주요 이월 내역
2021년	6,594백만원	공사비 6,328백만원, 감리비 159백만원 등
2022년	4,342백만원	공사비 2,316백만원, 감리비 148백만원 등
2024년	1,394백만원	공사비 1,384백만원, 감리비 10백만원 등

※ 자료: 경찰청

□ 참고로, ‘경찰대학 운영’ 사업은 2022년 재정사업자율평가⁹³⁾에서 연례적 사업비 과다이월로 인해 ‘미흡’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2024년 경찰대학 운영 예산은 편성 단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0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축소되었음.⁹⁴⁾ 이러한 사업비 축소는 경찰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은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등 건설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공정 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93)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각 정부 부처가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되어, 부처의 책임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근거).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재정사업자율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4)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출구조조정 산출액은 14.75억원임.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추진 중인 국제경찰교육훈련 센터 증축 사업의 경우, 2025년 8월 이월금액 전액 집행 및 12월 내외부 마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거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1. 경찰병원 인건비(4302-111)

- 경찰병원은 2024년 인건비 예산 집행률이 82% 수준이고, 18%가 불용되었는데, 집행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원 대비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직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병원인건비는 경찰병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년도에는 501억 4,1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고, 3억 1,1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은 498억 3,000만원임. 예산현액 중 408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집행률 82%), 불용액은 89억 4,600만원임(불용률 18%).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 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경찰병원인건비	50,141	50,141	-	△311	-	49,830	40,884	-	8,946	50,207

※ 자료: 경찰청

나. 인건비 예산 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 경찰병원 인건비 중 보수는 464억 8,800만원 중 399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전공의와 공무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 33억 1,100만원 중 7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음.

예산	집행액
○ 합계: 501억 4,100만원 · 보수: 464억 8,800만원 · 기타직 보수: 33억 1,100만원 · 연가보상비 3억 4,300만원	○ 합계: 408억 8,400만원 · 보수: 399억 5,500만원 · 기타직 보수: 7억 9,600만원 · 연가보상비 1억 3,300만원

자료: 경찰병원

- 2024년 경찰병원 인건비 집행률은 81.5%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병원 인건비 집행을 중 가장 낮은 수준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병원 인건비 집행률은 94% 이상이었고, 2020년에는 89.4%였음.

<2020년~2024년 경찰병원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A)	41,945	41,935	41,824	43,182	50,141
예산현액	38,087	41,332	41,651	42,023	49,830
집행액(B)	37,058	39,616	40,303	40,584	40,884
집행률 ($B \div A \times 100$) (예산액기준)	89.4%	94.5%	96.4%	94.0%	81.5%

자료: 경찰병원

□ 경찰병원 인건비 예산 중 보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임.

2024년 연말 기준 경찰병원 소속 공무원 정원은 681명 중 현원은 622명이고, 휴직인원 46명을 제외한 576명(84%)이 근무를 하고 있음.

구 분	계	원장	일 반 직													경찰
			의무	약무	간호	의료기술	행정	간호조무	위생	운전방호	전산	공업시설	운영	보건	사서복지식품	
정 원	681	1	74	21	268	107	69	68	22	13	7	15	4	4	4	4
현 원	623	1	66	21	247	106	67	47	20	12	7	13	4	4	4	4
정규	543	-	37	18	236	97	62	35	13	10	7	13	4	4	3	4
임기제	80	1	29	3	11	9	5	12	7	2	-	-	-	-	1	-
휴직	46	-	3	1	25	6	2	4	3	-	-	1	-	-	1	-
근무인원	576	1	63	20	222	100	64	43	17	12	7	12	4	4	3	4

자료: 경찰병원

○ 정원을 기준으로 근무 인원의 결원이 많은 직렬은 간호사(44명)와 간호조무사(25명)임. 경찰병원에 따르면, 간호사는 8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는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해당 직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데 민간 병원의 보수 수준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많은 영역인데, 해당 요소들이 결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 경찰병원의 병상가동률이 25.5%로 낮았던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24년 경찰병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채용을 하고자 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약 60%를 채용했음.
- 이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면, 인건비 집행을 제고뿐만 아니라 병상가동률 제고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경찰병원에 출근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제공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수 등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경찰병원의 예산 중 기타직 보수 예산의 지급 대상에는 전공의(레지던트, 인턴)가 포함되어 있음. 2024년 연말 기준 레지던트 정원 39명 중 현원이 9명이고, 인턴 정원 14명 중 현원이 0명이었는데, 이는 2024년 2월 이후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의 여파로 보임.
- 경찰병원이 경찰관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경찰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충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직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공의 파업사태가 해소되는 상황이므로 경찰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인원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